■ 민족문화연구 제98호(2023.02.2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279-329.
http://doi.org/10.17948/kcs.2023..98.279

조선 초기의 禮樂 정비와 典禮書 간행*
—『세종실록』「오례」를 중심으로—

강제훈(姜制勳)**

목 차

1. 머리말
2. 『제사의식』과 『제사서례』 상정
3. 禮樂 정비와 五禮儀註 작성 배경
4. 『세종실록』「오례」의 구성과 내용
5. 『세종실록』「오례」 편집과 新樂 창제
6. 맺음말

국문초록

조선은 불교에 기반을 둔 고려를 부정하면서 유교 이념에 입각한 유교 예치를 지향했다. 독자적인 예와 악을 갖추고자 했던 조선에서는 시행 착오를 겪으면서 유교식 국가례인 오례를 정리하게 되었다. 이글에서는 『세종실록』에 부록으로 들어간 「오례」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검토하였다. 『세종실록』의 「오례」가 미완의 작업이라는 사실은 이미 밝혀진 바가 있다. 이글에서는 이 작업이 종료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으로 「용비어천가」로 대표되는 신악의 창제를 지적하였다. 유교의 예를 정리하는 작업은 음악의 정비와 짝을 이루는 것이었다. 『세종실록』의 오례는 조선 최초의 오례 정리 작업이었는데, 이는 雅樂 정비와 대응이 되어 진행된 것이었다. 아악과 별도로 唐樂과 鄕樂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향악과 당악이 조선의 음악이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다. 중국을 기원으로 하는 아악 일색으로는 조선의 예악을 운용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용비어천가」를 비롯한 新樂이 창제되었다. 오례 정리 작업의 초안이 이미 마련된 상태에서,

* 이 연구는 2022학년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새로 신악이 만들어졌다. 의례의 절차와 음악은 서로 대응이 되는 것인데, 신악을 의례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세종실록』「오례」 정리가 진행되던 시점에서는 신악과 예의 결합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종 때에는 작업을 마무리할 방안이 없었다. 오례 정리 작업은 신악과 의례의 조합 방식이 확정되는 세조 때에 가서야 마무리될 수 있었다. 그러나 유교식 국가 의례가 상당한 수준에서 운용되고 있었고, 여기에 신악이라는 새로운 음악이 더해졌기 때문에 조선은 독자적인 예악을 갖추어가는 목표에 한걸음 더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

주제어: 오례, 용비어천가, 아악, 신악, 국가의례, 제사의식, 국조오례의.

1. 머리말

유교적 정치론에 의하면, 천명을 받은 유교 군주는 자신의 덕에 근거하여 천명을 받은 것이고, 자신의 덕에 근거한 나름의 질서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덕은 내면이고 이것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 예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각 시대의 시왕은 나름의 국가 제도를 갖추게 된다. 이렇게 갖추어진 제도를 典章制度라 통칭하는데, 예・악・형・정은 전장제도의 핵심이었다. 통치의 수단으로서의 예악은 형정에 우선하며, 유교적 덕치를 구현하는 핵심 장치로서 간주하였다. 유교국가를 지향한 조선에서는 이전의 불교적 관행을 부정하면서, 유교 의례의 실천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천여 년 이어온 뿌리 깊은 불교적 사회 관습을 부정하면서 유교적 의례를 사회 일반이 실천하도록 강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유교식 국가의례는 길・흉・군・빈・가례의 오례로 범주화되는데, 민간 의례의 분류 방식인 관혼상제와 구분되는 분류법이다. 國家禮와 私家禮를 대립적인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특정 왕조의 국가례는 사가례를 포섭하는 것이다. 유교 의례의 실천을 유교적 지향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유교 의례를 시행하는 근거가 되는 전례서의 작성이 조선의 현안이 되었다. 15세기에는 세 번에 걸쳐 그 결과물이 도출되었다.

첫째는 태종 말년에 완성된 『諸祀儀式』과 『諸祀序例』이다. 두 책은 국가의 祀典과 관계된 것으로 길례 영역의 정리 결과이다. 태종 때 간행된 형태로

현존하지 않지만, 『세종실록』「오례」의 길례가 두 책이 수록된 것으로 검토되었다.[1] 둘째는 『세종실록』에 부록된 「오례」이다.[2] 세종이 집현전에 편찬 작업을 지시하였고, 그 결과물로 이해되지만, 길례 부분은 태종 때 결과물을 수록하였다. 나머지 四禮가 집현전 작업이라는 것인데, 당대에 미완의 책으로 평가되어 『세종실록』에 부록하는 문제에 강한 이견이 있었다. 미완의 저술이기는 하지만, 전례서를 표방한 것은 분명하다. 셋째는 『國朝五禮儀』인데, 성종 때 간행되었다. 조선의 국가례 정비가 이 책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이해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책명부터 의문이 제기된다. 당대 서문을 작성한 강희맹과 전문을 올린 신숙주가 모두 '오례의'로 책명을 기재하고 있다.[3] '國朝'라는 범상치 않은 명칭이 언제 덧붙여졌는지 명확하지 않다.

세 번의 결과물의 공통점은 연대기에서 이들의 완성 시점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공교롭게도 『태종실록』『세종실록』『성종실록』에서 세 저서의 간행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 「실록오례」는 미완의 책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두 책은 간행된 이후 시점에서 전례서로서의 위상을 인정받고 있는데, 정작 실록 편집 과정에서는 편찬 사실을 누락시켰다. 당시로서는 이런 판단을 내린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실록오례」의 경우도 미완으로 지적하지만, 편집의 책임을 맡은 집현전과 의정부가 간단치 않은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완성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글에서 필자는 의례의 검토가 항상 음악의 정리와 병행되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禮樂의 정비라는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였다.[4] 출발점에서는 의식 절차와 구성 요소의 검토를 의례 정비로 이해하였지만, 점차 음악의 영역이 이에 개입하면서, 예악의 상호 조응이 관계자 사이에서 점점 주요한 과제가 되었다고 판단하였다.[5] 15세기 의례와 음악의 정비는 역사와 음악사 영역에서

1) 김해영, 『朝鮮初期 祭祀典禮 硏究』 집문당, 2003, 172-178면 참조.
2) 이하 본문 서술에서는 「실록오례」로 표기.
3) 박경지, 「조선초기 國家禮 정비와 『國朝五禮儀』 편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21, 44-50면 참조.
4) 柳肅(홍희 역), 『예의 정신-예악 문화와 정치-』 동문선, 1994, 제1장.
5) 종래 역사학에서는 전례서 간행에 관심을 가졌지만, 이 시기 樂書도 여러 종이 간행되었다. 태종

분리되어 진행되고 있는데,[6] 서로 통합하여 검토가 진행되어야 비로소 진면목이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7]

현재로서는 가설적 문제 제기이지만, 이글의 검토가 유교 국가의 출현과 전개라는 역사상의 분기점을 당시 사람의 시선에서 이해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국조오례의』까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지만, 분량상의 문제로 본고에서는 「실록오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다.

2. 『제사의식』과 『제사서례』 상정

유교적 국가례는 오례로 범주화되는데, 조선은 독자적인 오례 체제를 갖추게 된다. 『국조오례의』는 조선의 오례 체제를 담고 있으며, 공인된 전례서이다. 그러나 조선의 의례 정비에 처음부터 오례를 갖추고자 하는 의도적 시도가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단계적으로 유교 의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경험과 성과가 집적되면서 오례를 갖추고자 하는 노력을 본격화하였다.

조선의 유교적 지향은 즉위교서에 유교적 의례의 실천으로 제시되어 나타난다.[8] 즉위교서가 반포된 지 10여 일 뒤에는 예조에서 국가 사전 제도의

때 『조선국악장』을 비롯하여, 세종 때 『세종실록』「악보」, 세조의 『세조실록』「악보」와 『대악후보』 등이 현존하고 있고, 성종 때는 『악학궤범』이 간행되었다. 각각은 의례 연구와 병행된 성과인데, 의례서와 악서를 종합하여 분석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다.

6) 조선초기 오례 정비 과정을 검토한 역사학 분야의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범직, 『한국중세예사상연구-五禮를 중심으로-』, 일조각, 1991; 이완재・김송희, 「조선초기의 儒敎的 國家儀禮에 대한 연구-五禮의 儀禮官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10, 1998; 김해영, 「조선초기 禮制 연구와 『國朝五禮儀』의 편찬」, 『조선시대사학보』 55, 2010; 강제훈, 「조선초기 국가의례 정비의 지향과 원칙」, 『민족문화연구』 68, 2015.
음악 분야에서는 조선 초기 국가의 음악 정비에 대해 최근에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종숙, 「조선조 豊安・雍安・興安之樂의 아악성향 분석」『한국무용사학』 12, 2011
송지원, 조선 초기 국왕의 음악정책—태조・태종・세조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57, 2016
김수현, 「실록악보 서문으로 본 세종・세조의 음악 실천과 이론」, 『장서각』 46, 2021
정화순・김인숙, 「선초 속악의 7음 음계에 관한 연구」『한국음악사학보』 69, 2021
임영선, 「조선 초기 향당교주의 중심음에 관한 연구」, 『국악원논문집』 44, 2021
최헌, 「조선 초기 향악 악조의 체계화 연구」, 『동양예술』 54, 2022.

7) 음악 자료와 음악 사학계의 연구 성과를 이해하는데, 임영선 박사의 조언에 큰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이글에 노출된 음악 자료 해석과 기존 성과에 대한 오해 부분은 전적으로 필자의 부족한 공부에 기인한 것임을 밝힌다.

시행을 건의하면서, 국가적 수준에서 진행하는 불교와 도교 의례의 폐지를 주장하였다.[9] 조선에서 국가 유교 의례가 선언되고 시행되는 첫걸음이었다. 태종대에 와서는 국가 사전을 총괄 정리한 전례서가 처음으로 작성되었다. 『諸祀儀式』과 『諸祀序例』가 그 성과인데, 두 책은 별도로 전해지지는 않지만, 「실록오례」의 길례에 수록되었다.

필자는 유교적 국가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조선에서 추구했던 지향을 지적한 바가 있다. 첫째는 국가적 수준에서 시행하는 유교 의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향이다. 둘째는 조선이 만들고자 한 유교 의례가 친왕 등급의 의례였다는 점이다. 명과의 외교적 갈등을 극복하면서, 명을 시왕으로 인정하고, 조선은 친왕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 관계를 배경으로 조선에서 해석한 친왕 등급 국가례를 정비하게 된다. 셋째는 친왕 등급의 국가 유교 의례를 정비하면서, 체양의 일치라는 지향점을 갖게 되었다. 한 국가의 의식이 일관된 의례 형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이었다. 실제로 의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과제를 안기도 하였다.

〈표1〉「실록오례」 길례 의식

	천	지	인
대사		①親祭社稷 ②祭社稷攝事 ③祈告社稷【報祀附】 ④州縣祭社稷	⑤親祫宗廟 ⑥祫享宗廟攝事 ⑦四時及臘親享宗廟 ⑧四時及臘享宗廟攝事 ⑨朔望享宗廟【歲時同】 ⑩祈告宗廟【報祀附】 ⑪薦新宗廟【蒐狩薦禽圖】
중사	⑬祀風雲雷雨山川城隍 ⑭風雲雷雨壇祈雨【報祀附】	⑫祭中霤 ⑯祭嶽海瀆 ⑰祭三角山【漢江儀附】 ⑱時旱北郊望祈嶽海瀆 及諸山川【報祀同】	㉓親享先農 ㉔享先農攝事 ㉕享先蠶 ㉖雩祀 ㉗雩祀壇祈雨【報祀附】

8)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7월 28일(정미)
9)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8월 11일(경신)

		⑲時旱就祈嶽海瀆及諸山川	㉙視學酌獻文宣王 ㉙王世子釋奠文宣王 ㉚有司釋奠文宣王 ㉛州縣釋奠文宣王 ㉜享朝鮮檀君 ㉝享高麗始祖
소사	⑮祀靈星 ㉞祀馬祖 【享先牧・祭馬社・馬步儀附】 ㉟享司寒	⑳祭山川 ㉑祭木覓 ㉒久雨禜祭國門	

『제사의식』과 『제사서례』는 1415년(태종15)과 1416년(태종16) 무렵 작성되었다. 「실록오례」에 수록된 길례의식이 『제사의식』이 전재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므로, 이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1〉에 정리한 바와 같이 「실록오례」 길례는 서례에 15개의 표제 항목, 의식에 35개의 표제 의식으로 되어 있다. 1414년 예조에서,[10] 1415년 예조와 의례상정소에서 제정한 의식을 보고하였다.[11] 『제사의식』은 이때의 의식을 종합 편집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1416년 5월 『제사서례』를 詳定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된다.[12] 물론 해당 기사는 『제사서례』의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실록오례」 서문에 길례는 허조가 작업한 결과물을 수록했

10) 『태종실록』 권28, 태종 14년 9월 8일(戊寅)
11) 『태종실록』 권29, 태종 15년 3월 3일(辛丑)
12) 『태종실록』 권31, 태종 16년 5월 23일(갑인).
1413년과 1414년에 실록에 기재된 의식을 제시하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제사의식(諸祀儀式)

	詳定儀
1414년 (태종14)	①檀君 ②箕子 ③高麗始祖儀, ④祀靈星 ⑤馬祖 ⑥司寒 ⑦山川儀 ⑧久雨禜祭國門儀
1415년 (태종15)	①宗廟親祫儀 ②攝事儀 ③朔望奠儀 ④祈告儀 ⑤薦新儀 ⑥祭中霤儀 ⑦文昭殿親享儀 ⑧風雲雷雨壇祈雨

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사의식』과 『제사서례』로 이해하는 것이다.[13]

어떻든 1413년 어간에 의례의 집중 정비가 진행되었다. 1413년 4월에 고려의 『상정고금례』를 참조하여 조선의 대·중·소사를 결정하였다.[14] 『상정고금례』에 의하면, 사직·종묘·별묘는 대사, 선농·선잠·문선왕은 중사, 風師·雨師·雷師·靈星·司寒·馬祖·先牧·馬步·馬社·禜祭·七祀와 지방의 문선왕은 소사였다. 예조에서는 명나라 『홍무예제』를 근거로 풍운뇌우와 산천·성황을 하나의 제단에서 제사하는 조선의 방식을 유지하되 중사로 상향하고, 지방 문선왕 제사도 중앙과 동일하게 중사로 통일하기로 하였다.

1414년 4월 선농만 제사하고 중농·후농은 제사하지 않기로 하였다.[15] 같은 해 우사의 신주 제도가 제정되었다.[16] 1414년 8월 조선의 산천을 중사인 악해독과 소사인 산림·천택으로 규정하여 祀典을 정리하였다.[17]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해서 조선은 길례의 등급을 재정리하였고, 전국의 산천을 조선적인 기준에 의해 조정하는 작업을 마감하였다.[18]

태종 때 조선의 대·중·소사의 등급 구분은 부분적으로 수정되기는 하였지만, 대체로 고려의 것을 답습하였다. 왕릉 제사는 대사에 해당하는 의례인데, 『제사의식』에 관련 의식이 누락되었다. 〈표2〉에서 1414년 기자 제사가, 1415년 문소전 제사 의식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제사의식』에는 두 의식이 수록되지 않았다.

태종 때의 문소전은 태조와 신의왕후의 어진을 모신 공간이었다. 세종 때 태종과 원경왕후의 위패를 모신 광효전이 운영되면서, 세종은 종묘와 별도로 선왕과 선후를 봉안할 지속 가능한 공간을 구상하게 되었다. 매번 국왕과

---

13) 『세종실록』 권128, 오례 서문 '國初, 草創多事, 禮文不備, 太宗命許稠, 撰吉禮序例及儀式, 其他則未及 (…) 其已成四禮, 幷許稠所撰吉禮, 附于實錄之末'
14) 『태종실록』 권25, 태종 13년 4월 13일(辛酉)
15) 태종실록 권27, 태종 14년 4월 14일(丁巳)
16) 태종실록 권27권, 태종 14년 5월 18일(庚寅)
17) 『태종실록』 권28, 태종 14년 8월 21일(辛酉)
18) 이때의 결정 사항은 의례 정비 작업의 귀결점인 『국조오례의』에도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 주제에 관해 다음의 연구에서 전론적인 검토를 진행한 바가 있다.
김태영, 「朝鮮 初期 祀典의 成立에 對하여-國家意識의 變遷을 中心으로-」, 『역사학보』 58, 1973.

왕비가 사망할 때마다 새로 공간을 조성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그 결과 조성된 것이 통합된 문소전이었다. 세종 때 조성된 문소전은 위패를 모시도록 설정되었다. 태조를 포함해서 국왕의 직계 4대를 봉안하는 구상이었고, 전적으로 유교 의례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어진을 모신 공간에서 승려와 불교식 상차림을 적용하던 습속을 철저하게 배제하였다. 직계 4대만을 봉안할 것이므로, 지속적인 운영도 가능할 것이었다. 문소전이라는 명칭은 승계되었지만, 세종 때의 문소전은 태종 때 태조와 신의왕후의 어진을 봉안했던 공간과는 확연하게 다른 것이었다.

1412년(태종12) 단군과 기자를 하나의 사당에서 제사하기로 하였다.[19] 이 결정은 기자를 주로 하고 단군을 부로 제사하는 것이었다. 1425년(세종7) 단군을 기자와 구분하여 별도의 사당을 세웠다.[20] 이때까지 단군은 기자사당에 配位로 모셔진 상태였다. 그러다가 정척의 건의로 국가 건설의 선후를 고려하여 단군을 구별하여 제사하기로 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태종 때는 제사에서 기자가 중심이 되었다. 당연히 의주도 기자가 중심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록오례」의 길례의식에서는 '향조선단군' 의식 표제에 '기자에게 제향하는 의식도 같다.'라고 부기하는 것으로 처리되었다.[21]

두 가지 사례는 「실록오례」의 길례 서례와 의식이 세종 때 수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록오례」 서문에는 태종의 지시로 허조가 찬한 『길례서례』와 『길례의식』이라 밝히고 있다. 또한, 세세히 기술하지 않지만, 세종 때 길례 의식이 수차례 개정되었는데, 「실록오례」 길례는 세종 때의 수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 축판에서도 태조에 대해 孝子로 제사 주체를 지칭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태종 때 기록이 분명하지만, 세종 때 부분적인 수정이 가해졌고, 수정된 사실이나 부분이 명확히 지적되지 않은 상태로 「실록오례」에 편입되었다고 이해된다.

두 책의 간행 시점을 확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사실이 있는데, 1416년 건원릉 別祭儀 제정이다.[22] 〈표1〉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왕릉 제사 의식은 수록

19) 『태종실록』 권23, 태종 12년 6월 6일(己未)
20) 『세종실록』 권29, 세종 7년 9월 25일(辛酉)
21) 『세종실록』 권131, 五禮 吉禮儀式 享朝鮮檀君儀 時日
22) 『태종실록』 권31, 태종 16년 5월 2일(계사)

되어 있지 않다. 왕릉은 고려 때 기준에 의하면 대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빠질 수는 없다. 따라서 『제사의식』의 편찬 시점은 건원릉 별제의 제정 이전이었다. 반면에 『제사서례』에는 삭망과 세시에 시행하는 건원릉의 제사 시점 등이 규정되어 있다.[23] 건원릉 별제의 제정을 전하는 기사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가1) 예조에서 건원릉 별제의를 올렸다. 아뢰기를 "친행하는 별제 의주에 작을 올린 후에 상향하며, 작헌한 이후에 배례가 없는 절차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문소전에 친행하는 의주처럼 상향 후에 작을 올리고, 작을 올린 후에 두 번 절하도록 하십시오." 하니, 따랐다.[24]

인용문 가1)에 보이는 것처럼 문소전 친행의가 이미 제정된 상태였는데, 이에 준하여 건원릉 의주에서는 奠爵 절차를 상향 후에 작을 올리도록 조정하였고, 獻爵 절차에도 拜禮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제사의식』에는 이 의주는 수록되지 않았다. 그런데, 세종 즉위 직후에 拜陵儀가 제정되었다. 1416년 건원릉 별제의를 작성하였는데, 1418년(세종 즉위) 12월에 배릉의를 다시 제정한 것이다.[25] 제정 경위는 알 수 없다. 1416년 의식이 특정 왕릉에서의 의식이어서, 보편적인 왕릉 제사 의식을 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제정된 의식 절차는 가1)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상향을 먼저 하고, 술잔을 올린 다음, 마지막에 배례를 하는 구성이다.

세종 즉위 직후의 배릉의는 세종 초반의 의례 정비가 어떤 방향을 갖게 될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술잔을 올린 이후 배례를 할 것인가의 문제는 태종 때 중요한 의례 논쟁의 사안이었다. 유교국가를 지향하면서 이를 의례의 실천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조선에서 가장 손쉬운 해결책은 時王으로 인정한 명의 제도를 時制로서 수용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조선의 건국 초기 두 나라 관계가 불편

---

23) 『세종실록』 권128, 五禮 吉禮序例 時日

24) 『태종실록』 권31, 태종 16년 5월 2일(계사) 禮曹上健元陵別祭儀。啓曰: "親幸別祭儀注內, 奠爵後上香, 獻酌後無拜未便。依文昭殿親幸儀注例, 上香後奠爵, 獻爵後再拜。" 從之

25) 『세종실록』 권2, 세종 즉위년 12월 17일(임진)

하였기 때문에, 명에서 의례 제공을 거부하였다. 고려의 예제는 친왕 등급을 추구하는 조선에서는 그대로 승계할 수 없는 것이었다. 조선은 명나라 『홍무예제』의 내용을 토대로 시제를 추정하여 국가 제사 의식을 설정하였다.

당시 실권자인 하륜은 이렇게 조선에서 해석한 시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예제를 구성하였다. 태종은 유교의례의 철저한 시행에 공감하였지만, 종묘와 원묘의 의례에 수용된 시제에는 불만을 드러냈다. 조선이 해석한 시제에서는 전폐나 헌작, 음복 등의 순서를 진행한 후, 배례를 시행하지 않았다. 태종은 배례를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 의문을 제기하였고, 허조가 당과 송의 제도를 고제로서 제안하면서, 배례의 시행을 주장하였다. 제사에서 배례의 유무가 시제와 고제 논쟁의 쟁점이 되었다. 두 입장은 조선 최초의 전례서인 『제사의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 당시의 대립은 『제사의식』의 구성에 영향을 미쳤다. 다음 〈표3〉은 당시의 쟁점을 살피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26]

〈표3〉「실록오례」 길례 의식 구성

	奠幣	初獻	飮福
①親祭社稷儀	〈瘞毛血+再拜〉三上香+獻幣	奠爵+讀祝	飮爵+受俎+再拜
②親祫宗廟儀	三上香+祼地+奠幣 (再拜)	奠爵+讀祝 (再拜)	飮爵+受俎+再拜
③四時及臘親享宗廟儀	三上香+祼地+奠幣 (再拜)	奠爵+讀祝 (再拜)	飮爵+受俎+再拜
④祀風雲雷雨山川城隍儀	〈再拜〉三上香+獻幣	奠爵+讀祝	飮爵+受俎+再拜
⑤祀靈星儀	三上香+獻幣	奠爵+讀祝	飮爵+受俎+再拜
⑥祭嶽海瀆儀	〈再拜〉三上香+獻幣	奠爵+讀祝	飮爵+受俎+再拜
⑦祭山川儀	三上香+獻幣	奠爵+讀祝	飮爵+受俎+再拜
⑧祭木覓儀	三上香+獻幣	奠爵+讀祝	飮爵+受俎+再拜
⑨親享先農儀	〈再拜〉三上香+獻幣 (奠毛血)	奠爵+讀祝	飮爵+受俎+再拜
⑩享先蠶儀	〈再拜〉三上香+獻幣	奠爵+讀祝	飮爵+受俎+再拜
⑪雩祀儀	〈再拜〉三上香+獻幣	奠爵+讀祝	飮爵+受俎+再拜
⑫有司釋奠文宣王儀	三上香+獻幣	奠爵+讀祝	飮爵+受俎+再拜
⑬享朝鮮檀君儀	三上香+獻幣	奠爵+讀祝	飮爵+受俎+再拜
⑭祀馬祖儀	三上香+獻幣	奠爵+讀祝	飮爵+受俎+再拜
⑮享司寒儀	三上香	奠爵+讀祝	飮爵+再拜

〈표3〉에 정리된 것처럼 『제사의식』의 의례 절차는 서로 일관성을 갖추어

26) 강제훈, 「조선 세종조의 國家禮 정비와 五禮의 성립」『한국사학보』 82, 2021, 102쪽, 인용.

작성되지 않았다. 물론 당시에도 조선의 길례 의식이 통일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왕실조상의례에 해당하는 종묘 제사(②,③)에서는 전폐와 작헌이 재배로 매듭지어지도록 규정되었다. 반면에 나머지 의식에서는 전폐와 작헌을 시행한 후 배례가 생략되었다. 이 경우에도 사직(①)과 풍운뇌우(④), 악해독(⑥) 등의 제사에서는 전폐에 앞서서 배례를 하기도 하였다. 배례는 제사 절차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동작이었기 때문에 이의 시행 여부는 해당 의식을 이해하는 인식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전폐와 작헌에 무배례로 절차를 구성하는 방식은 명의 時制를 수용한 것이었다. 반면에 배례를 시행하는 것은 당과 송의 古制를 따른 것으로, 의례 담당자 사이에 두 방식을 두고 심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 조선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논쟁을 해소할 수 없어, 명의 의견을 구하기도 하였지만, 명에서 '本俗을 따르라.'라고 답을 주었다. 기대했던 해결책을 얻지 못한 조선에서는 왕실조상 의례에 한해서는 종묘의 다섯 신실에서 전폐와 작헌을 시행한 후, 최종적으로 건물 가운데로 이동하여 한 번만 재배를 시행하는 절충안을 채택하였다. 『제사의식』에 정리된 의식은 이러한 절충안을 반영한 것이었다.

체양의 일치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도 이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다음은 예조에서 제기한 문제점이었다.[27]

> 가2) 지금 五室에 酌獻한 뒤에 泰階에서 再拜하는데, 唐·宋의 예에 어긋남이 있고, 또 時王의 제도에 어긋납니다. 《洪武禮文》에 비록 종묘의 예는 없으나, 사직·산천·문선왕에 모두 작헌한 후 절이 없는데, 어찌 종묘 작헌에만 절이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태계에서 재배하는 예를 없애고 한결같이 시왕의 제도에 따르십시오.

가2)에 의하면, 예조에서는 종묘 의식만 다른 절차로 구성된 것을 지적하였다. 시제와 고제의 충돌로 절충안이 마련되었지만, 시제를 주장한 측에서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시제의 방식은 하륜에 의해 주장되었고, 고제의 수용은 허조가 주도하였는데, 『제사의식』의 절차는

27) 『태종실록』 권32, 태종 16년 7월 3일(임진)

대체로 시제를 따르고 있고,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종묘 절차는 절충안을 적용하였다. 절충안이 채택되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하륜의 의견이 우세한 구성이었다. 그런데 『제사서례』가 편집된 1416년 연말에 하륜이 사망하였다.[28] 가1)의 건원릉 의식은 허조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고제를 주장한 측에서도 절충안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세종 즉위년 작성한 배릉의는 허조의 입장을 반영한 의례 절차를 설정하고 있다. 세종 초반 조선의 의례 구성은 허조의 의견에 따라 고제를 적용한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제사의식』과 『제사서례』는 조선에서 최초로 정리된 전례서였다. 그러나 당시 관계자들은 책의 구성에 만족하지 않았다. 시제와 고제를 주장하는 양자 사이에 강한 대립이 있었고, 전례서는 절충안을 반영하여 구성하였다. 그러나 절충 방식을 논쟁 양측이 합의하거나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의례 정리 과정에서는 이러한 논쟁에 가려진 또 다른 숙제가 있었다. 의례에 대한 집중적인 정비 작업에 앞서서 음악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1409년 태종은 예악 정비의 방향을 천명한 바가 있다.[29] 그의 언급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가3) 禮樂은 중한 일이다. 우리 東方에서는 아직도 옛 습관을 따라 종묘에는 아악을 쓰고, 조회에는 전악을 쓰고, 연향에는 鄕樂과 唐樂을 번갈아 연주하므로, 난잡하고 절차가 없으니 어찌 예악이라 이르겠는가? 아악은 곧 당악이니, 참작 개정하여 종묘에도 쓰고 조회와 연향에도 쓰는 것이 옳다. 어찌 일에 따라, 그 樂을 다르게 하겠느냐?

가3)에서 태종은 명의 제도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의례에 적용되는 음악을 사용하려고 하였다. 제사와 조회, 연향이 음악이 적용되는 의례 영역인데, 당시에는 각각 다른 성격의 음악이 사용되고 있었다. 태종은 아악으로 이를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1411년(태종11) 예조의 건의를

28) 『태종실록』 권32, 태종 16년 11월 6일(계사)
29)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4월 7일(기묘)

수용하여 아악을 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30] 정리 작업의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충주사고에서 발견된 樂圖를 전악서에서 검토하게 하는 등 관련 사업이 수행된 흔적은 확인된다.[31]

박연은 세종 때 음악 정비 작업을 주도한 인물로 여러 번 관련 상소를 올렸다. 그런데 1426년(세종8) 독특한 연구 결과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기존 음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상서를 작성하였는데, 『朝鮮國樂章』의 내용을 근거로 현행 음악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기술하였다.[32] 박연은 상소문에서 『조선국악장』은 조선의 제사악을 기재한 것인데, 아악을 사용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내용으로는 악장 38수와 12律聲通例가 제시되고 있다.[33]

『조선국악장』이 언제 형성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박연의 상소문에 적전과 선잠 등이 한 항목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적전과 선잠 악장은 1401년(태종1) 김첨의 건의로 작성되었다.[34] 『조선국악장』은 아악의 제사악을 담고 있는 책인데, 태종 때 새로 만든 악장을 수록하고 있는 것이다. 잠정적으로 『조선국악장』이 1411년(태종11)의 아악 정리의 결과일 것으로 추정한다. 이 저술이 1411년 작업의 결과인지와 상관없이 의례 정비 작업과 병행하여 음악을 정리하는 작업이 시행되었음은 분명하다. 이점을 염두에 두고 〈표4〉에 주목하자.

〈표4〉「실록오례」 길례서례 구성

「실록오례」 길례서례		
①辨祀	⑦祭器圖說	⑫齋戒
②時日	⑧饌實圖	⑬獻官
③壇壝	⑨牲牢	⑭冠冕
④神位	⑩樂器圖說	
⑤祝版	⑪樂懸圖	
⑥幣帛		

30) 『태종실록』 권22, 태종 11년 12월 15일(신축)
31) 『태종실록』 권23, 태종 12년 4월 3일(정사)
32) 『세종실록』 권32, 세종 8년 4월 25일(무자)
33) 『조선국악장』에 대해서는 송혜진, 「조선초기 『대성악보』의 수용과 변용」, 『한국아악사연구』, 민속원, 2000, 131-143면.
34) 『태종실록』 권2, 태종 1년 12월 21일(을해)

「실록오례」의 길례서례는 태종 때의 내용을 수록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⑩악기도설과 ⑪악현도가 포함된 점이 이색적이다. 악현도는 사직과 종묘를 따로 분류하였지만, 방위가 다를 뿐 구성은 동일하다. 사직과 종묘, 각각 軒架와 登歌, 文・武舞를 수록하였다. 『제사의식』에 수록된 의주에는 각 절차에 사용되는 선율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해당 선율을 연주하는 악대의 구성을 알 수 있도록 서례에 이를 제시한 것이다. 서례에 그려진 악현도는 아악에 사용되는 구성이다. 악기도설도 아악기만 그렸다. 이럴 경우 의문이 제기된다.

「제사의식」에 수록된 태종 때 제사에서 술을 올리는 종헌은 鄕樂을 교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음악은 중사 등급 이상의 제사에서 사용되는데, 중사에 해당하는 악・해・독과 역대시조의 제사에는 음악을 사용하지 않는다.[35] 국왕과 서울이라는 공간이 음악 사용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경우, 두 제사는 지방에서 시행되고, 지방관에 의해 대행되는 의례이다. 기우제와 같은 특정 목적의 제사에도 음악이 사용되지 않았다. 본연의 제사가 아닌 경우에는 음악을 사용하지 않은 듯한데, 의례와 음악 사용에 대한 검토는 향후 진행해야 할 과제이다.

어떻든 음악을 사용하는 제사에서 종헌에는 당악과 향악을 교주하는 것이 태종 때의 일관된 원칙이었다. 태종은 아악 중심으로 제사와 조회, 연향악을 운영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지만, 당시는 이러한 국왕의 의지가 의례 현장에서 구현되지 않았다. 다만 『제사서례』에 아악만의 악기와 악현도가 제시된 것은 국왕의 의향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당시 최신의 음악 정리 성과가 아악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실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제사서례』에서는 현실과 괴리되어 아악만의 음악 정보를 수록했다는 점은 지적해 둔다.

35) 『국조오례의』에서는 소사인 둑제에도 음악이 사용된다. 『제사의식』에는 둑제 의식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3. 禮樂 정비와 五禮儀註 작성 배경

1)「실록오례」 수록 경위

오례가『세종실록』에 지로 수록되는 데는 약간의 곡절이 있었다.「오례」지를 두고 두 차례 논란이 야기되었다. 처음에는 세종 시기에 일상적으로 의례가 진행되면서 작성되었던 의주를 별도의 지로 만드는 사안이었다. 정인지・허후 등은 지를 만들자는 입장이었고, 김조・박중림 등은 날짜별로 기록하자는 의견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국왕이었던 문종이 날짜별 기재에 동의하였다.[36]『세종실록』에는 300여 종의 의주가 기사로 수록되었는데, 문종의 의중이 편집에 반영된 것이다.

다음으로는 세종의 지시로 작성된 오례를 지로 수록하는 문제였다. 1444년(세종26) 세종은 집현전에 五禮儀註를 상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37] 해당 기사에는 지시를 받은 관원으로 변효문・정척을 포함하여 7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변효문과 정척은 1440년 종묘의주를 개정하는 작업을 담당하였다.[38] 이들은 광평대군의 상례를 담당하였고,[39] 소헌왕후 빈전도감의 제조를 역임하였다.[40] 또한, 문종 때는 세종의 상례의주를 작성하기도 하였다.[41] 문종 때쯤이면, 이들이 오례 정리 작업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의례의 전문가로 인정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1452년(단종 즉위)『세종실록』의 편찬 작업 중에 이들이 정리한 오례를 실록에 싣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기주관들은 편입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허후는 이에 대해 반대하였다.[42] 허후는,

"이는 國論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변효문 등 몇 사람이 편찬한 것이다. 세종께서

---

36)『문종실록』 권13, 문종 2년 5월 2일(갑오)
37)『세종실록』 권106, 세종 26년 10월 11일(병진). '命僉知中樞院事卞孝文・鄭陟, 成均司藝閔暖, 集賢殿校理河緯地, 博士徐居正, 校書校勘朴元貞, 承文院副正字尹恕, 詳定五禮儀注于集賢殿'
38)『세종실록』 권88, 세종 22년 1월 8일(신해)
39)『세종실록』 권106, 세종 26년 12월 8일(임자)
40)『세종실록』 권111, 세종 28년 3월 24일(신묘)
41)『문종실록』 권1, 문종 즉위년 3월 20일(갑자)
42)『단종실록』 권3, 단종 즉위년 9월 13일(임인)

臣 허후와 鄭麟趾에 명하시어, 정부에서 다시 살펴 정하라고 하셨으나 살펴볼 겨를이 없어 檢詳司에 묶어 둔 상태이다. 이는 완성된 책이 아니므로 (편입은) 불가하다."

는 입장이었다. 반면에 오례를 허후와 함께 검토하도록 지시받은 정인지는 실록에 수록해야 한다고 하였고, 김종서는 편집작업에 들어갈 『문종실록』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논란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수록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해당 기사에는 신숙주가 강하게 반대했다는 사론이 덧붙여지기도 하였다. 그런데 현존하는 실록에는 싣지 않기로 한 「오례」가 삽입되어 있다. 「실록오례」에는 이미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오례 중, 길례는 태종 때의 것으로 대체하여, 나머지 四禮를 수록하는 방식으로 편집되었다. 처음의 결정이 번복되어 「오례의주」를 실록에 부기하게 된 경위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단순한 편집상의 실수인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허후가 아버지 허조의 작업이 손상된다는 점을 염려하여 「오례의주」 수록을 반대했다는 신숙주의 언급을 고려할 때, 허조가 관여한 길례 부분을 살리면서 「오례의주」를 실록에 편입하는 수정안이 누군가에 의해 제안되었고, 이러한 제안을 수용한 타협의 결과물이 현재 우리가 열람하는 「실록오례」인 것으로 추정된다. 허후는 1453년(단종1) 10월 계유정난 직후 죽음을 모면하였지만, 11월에 결국 교형에 처해진다.[43] 『세종실록』은 공식적으로 1454년(단종2) 3월 완성되었다.[44]

정척 등이 작업한 「오례의주」에서 길례 부분만 태종 때 작성한 『제사서례』 『제사의식』으로 대체한 이유는 허후의 영향력이 미친 것으로 이해되지만, 1453년 계유정난 발발에서 허후가 처형되기까지는 불과 한 달 정도에 불과한 시간이다. 정치적으로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실록오례」를 삽입하는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제사서례』와 『제사의식』은 공인을 받은 기록이었고, 새로 작성된 「오례

43) 『단종실록』 권9, 단종 1년 11월 11일(계해)
44) 『단종실록』 권10, 단종 2년 3월 30일(신사)

의주」는 아직 공인을 받은 상태는 아니었다. 정난의 핵심 참여자였던 정인지와 신숙주는 『세종실록』에 「오례의주」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들이 「오례의주」를 수록할 결심을 하였고, 공인된 길례 부분을 포함하여 「실록오례」를 재편집했을 가능성이 크다. 어떻든 계유정난의 정치적 소용돌이를 겪고, 우여곡절 끝에 『세종실록』이 완성되었고, 첫 번째 부록으로 「실록오례」가 편성되었다. 그러나 수십 년의 시차를 두고 있는 태종 때와 세종 때의 작업 결과를 불완전하게 편집한 이유와 이렇게 불완전한 「오례의주」를 실록에 부록하게 한 것인지 현재로서는 분명하지 않다.

2) 의례의 정비와 의주 작성 방향

세종이 오례의 편집을 지시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었다. 세종 때 다양한 의례 운영 경험이 축적되었다. 의례 정비의 의도를 가지고 의주 작성을 시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국가례로서 오례를 정비하려고 계획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국가 수준에서 시행되는 유교 의례를 정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치세 후반에는 오례의 정비를 단행할 수 있는 정도까지 경험이 집적되었다. 다음 〈표5〉는 『세종실록』에 수록된 의주를 세 시기로 나누어 분류한 것이다.[45]

〈표5〉『세종실록』 수록 의주

	길례	가례	빈례	군례	흉례	합계
초기 (0-8년)	15	26	2	2	105	150
중기 (9-21년)	13	48	0	2	3	66
후기 (22-32년)	9	18	2	0	55	84
합계	37	92	4	4	163	300

세 시기 구분은 의례 정비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기존의 검토에서 시기

45) 실록에 수록된 의주의 세부 목록은 강제훈, 「조선 『世宗實錄』「五禮」의 편찬 경위와 성격」, 『사학연구』 107, 2012, 〈부표〉 참조.

구분의 기준과 이유를 제시하였다.[46] 다만 시기 구분에서 실질적인 개정이 있었던 세종 9년부터를 중기로 포함시켰다.

첫 시기에는 『제사의식』과 『제사서례』가 작성되었음에도, 고제의 수용을 주장했던 허조가 주도하여 이를 부정하는 의례 운영을 시도하였다. 세종 즉위초에 여러 차례 국상이 발생했다. 1419년 정종이 사망하였고, 1420년 원경왕후가, 1422년 태종이 연이어 훙서하였다. 국상은 빈전에서 시작되지만, 왕릉이 조성된 이후 종묘에 신주가 봉안될 때까지는 혼전이 운영된다. 혼전은 흉례의 범주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혼전 의례는 길례 제사와 유사한 패턴으로 진행된다. 흉례의 제사이기 때문에 곡을 한다든지, 제수에 희생이 올려지거나 정통 유교식 제기인 변·두·보·궤를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종묘 제사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폐와 헌작 등의 의식 절차는 제사와 유사하게 진행된다. 태종 때 시제와 고제의 적용 문제로 심한 논쟁이 전개되었고, 결국 『제사의식』은 의례 패턴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었다. 특히 왕실조상의례는 절충안이 채택되었다. 그런데, 세종 초에, 시제를 주도한 하륜은 이미 사망하였고, 고제 적용을 주장한 허조는 국상을 주도하게 되었다. 허조는 자신이 주장한 방식으로 흉례를 구성하여 진행하였다.[47]

둘째 시기에는 고제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의주를 개정하였다. 고제를 적용한 흉례 제사는 길례의 제사 방식으로 채택되었다. 1427년(세종9) 종묘의 祼地 절차와 酌獻 절차에 배례를 시행하기로 하였다.[48] 1433년(세종15) 통합문소전이 새로 조성되면서, 종묘와 유사한 패턴의 의례가 마련되었다. 같은 해에는 대·중·소사 모두에 종묘나 능침과 동일하게 작헌후 배례를 시행하기로 하여, 전체 의주에 해당 절차를 수정 삽입하도록 하였다.[49] 흉례에서 시작된 제례 방식을 길례로 확대 적용하면서 길례와 흉례의 체형을 일치시키도록 하는 시도였다.

---

46) 강제훈, 「조선 세종조의 國家禮 정비와 五禮의 성립」, 『한국사학보』 82, 2021에서 전체적인 서술을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 각 시기의 구분 이유와 내용은 해당 글 참조.

47)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강제훈, 「조선 초기 왕실 조상의례의 유교적 정비」, 『한국사학보』 66, 2017, 140-151면; 「조선 세종조의 국가례 정비와 오례의 성립」, 『한국사학보』 82, 2021, 107-114면 참조.

48) 『세종실록』 권35, 세종 9년 1월 9일(무술)

49)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윤8월 24일(갑술)

그런데 이 무렵에는 조회와 회례, 혼인 등 가례 영역에 해당되는 의례에 대한 정비 작업이 병행되었다. 1430년(세종12) 국왕에게 왕세자와 관원이 朝賀하는 의식이 제정되었다.[50] 중궁에게 조하하는 의식도 이에 짝하여 준비되었다.[51] 또한 1432년 삭일과 조참의 의주가 제정됨으로써 조선의 일상적인 朝儀 의식을 재정비하는 작업이 일단락되었다.[52] 이런 과정에서 조선 朝儀의 기본형이 정비된다. 왕세자와 관원의 의례는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는데,[53] 구체적인 방식이 바로 이때 정리된 의주였다. 실제 의례에서 왕세자와 관원의 의례는 하나의 의례 공간에서 연이어 진행되지만, 의주는 분리되어 작성되었다. 또한, 조회에서 2품 이상의 관원과 3품 이하의 관원을 나누어 진행하는 先置의 원칙을 도입한 것도 이때 정비된 사항이었다.[54] 이러한 의례 패턴은 향후 조선의 조의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었다.

1431년(세종13) 조회와 함께 조의의 핵심을 구성하는 宴享의식의 의주도 작성되었다.[55] 왕세자와 관원의 의례 참여를 구분하는 원칙을 하나의 의례 절차에 담아내는 고민을 반영한 의주였다. 1427년(세종9) 왕세자 혼례가 진행되면서, 관련 의식이 제정되었다. 왕세자의 입학 관련 의식도 연이어 제정되었다. 왕비 책봉이 이루어지면서, 관련 의식의 정비도 진행되었다.[56]

의식 절차가 새로 정비되면서, 의례에 사용되는 음악에 대한 정비도 동시에 시도되었다. 1433년(세종15) 회례에는 새로 정비한 아악을 연주하였다.[57] 해당 기사에는 아악 정비의 과정을 세세하게 밝히고 있다. 이에 의하면, 1425년(세종7)부터 음악 정비를 목적으로 기장을 재배하고, 이듬해 磬石을 확보하여, 황종관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자연적인 기장으로 원하는

50) 『세종실록』 권50, 세종 12년 윤12월 23일(기미). 탄일 하례도 이 무렵 제정되어, 해당 의주가 수록되어 있다(『세종실록』 권51, 세종 13년 3월 16일 경진).
51) 『세종실록』 권50, 세종 12년 윤12월 28일(갑자)
52) 『세종실록』 권5권, 세종 13년 3월 14일(무인)
53) 『세종실록』 권50, 세종 12년 12월 2일(무진)
54) 선치 절차에 대해서는 강제훈, 「조선 초기 朝儀의 의례 구조와 상징」, 『한국사연구』 137. 2007 참조.
55) 『세종실록』 권54, 세종 13년 10월 3일(갑오)
56) 『세종실록』 권56, 세종 14년 5월 11일(무진)
57) 『세종실록』 권59, 세종 15년 1월 1일(을묘)

결과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밀랍으로 크기가 일정한 인위적인 기장 낱알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낱알 1,200개가 담아지는 황종관으로 소리 높이를 정하고, 이를 토대로 12율관을 제작하여 祭祀樂에 대한 정비가 가능하였다. 이로부터 아악에 쓰이는 다양한 악기를 제작하고, 음악 이론에 입각한 음악의 정리 작업이 뒤를 이었다. 이 결과 조회와 제사의 아악이 비로소 창제되었다.[58]

아악이 제사와 조회에 쓰일 목적으로 창제되었기 때문에 이 무렵 광범위하게 시행된 길례와 가례 범주의 의식 절차의 개정 작업은 의식과 用樂의 전면적인 개편을 의미했다. 예악의 정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중국식 아악을 조회와 잔치에 도입하고, 제사에서도 아악 일색의 제사악으로 정비하는 쪽으로 개정 방향이 잡힌 셈이다. 개정된 절차와 용악에 대해 당시에는 매우 만족스러운 것으로 판단하였다.[59]

셋째 시기에는 다시 時制의 방식을 적용하였다. 1440년(세종22) 1월 종묘親祀儀注를 수정하도록 하였다.[60] 당시 수정 지시를 받은 사람은 정척과 변효문이었다. 명나라 皇帝時享大廟儀에 근거하여 전폐・헌작・음복 절차에서 배례를 생략하기로 하였는데, 단순히 종묘에만 국한하지 않고, 나머지 모든 제사 의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정하기로 하였다. 이 조처는 각각에 배례가 있어야 한다는 허조의 주장을 뒤집은 것인데, 1439년 12월 허조가 사망한 직후에 내려진 조처였다. 경위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결정으로 조선의 제사 의식은 명나라 방식을 따르게 되었다. 古制와 時制의 시행을 두고 고심하던 조선의 예제가 표면적으로 명나라의 時制를 수용하는 것으로 다시 선회한 것이다. 1444년(세종26) 조선은 자신의 오례를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이 작업은 의도대로 마감되지 않았다. 먼저 이때 편집된 오례의 전체적인 대강을 살핀 후, 오례 정리가 마감될 수 없었던 이유를 검토한다.

---

58) 임영선 박사는 구두 대화에서 이 기록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세종 초 어느 시점부터 시작된 음악의 정비가 이 시기에는 단락이 지어진 점은 분명한 듯하다. 어쨌거나 이때 회례연에도 아악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59) 『세종실록』 권51, 세종 13년 1월 1일(병인)

60) 『세종실록』 권88, 세종 22년 1월 8일(신해)

4. 『세종실록』「오례」의 구성과 내용

「실록오례」의 중 길례 부분은 이미 기술한 것처럼 태종대의 작업으로 대체되었고, 그 작성 경위와 내용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나머지 사례의 특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61] 검토에 앞서, 「실록오례」의 의의를 주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독자적으로 五禮를 갖출 수 있는 정도로 유교 의례의 경험이 축적되었다는 점이다. 중국 禮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조선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의식으로 내용이 채워졌다. 편집 과정에서 의주를 새로 삽입한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이미 작성된 의주를 다시 정리하거나 수정하는 형태로 작업이 진행되었다.

둘째는 조선적 질서가 반영되었다는 사실이다. 천명을 받은 조선 내의 朝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조선 바깥의 범위에 적용되는 의례의 방식도 기술하고 있다. 오례의 정리를 통해서, 조선과 접촉하기 위해 오는 여진과 일본의 사절을, 조선 내외의 질서 안에 규정하고자 한 조선의 의도, 내지 인식을 읽을 수 있다.

셋째는 私家禮의 포섭을 명확히 의도했다는 사실이다. 국가례는 특정 왕조의 서열 관계를 형식화하는 것인데, 각 신분에 해당하는 의례 절차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가례가 포함되게 된다. 「실록오례」는 조선의 왕조 체제에서 사가례를 명시화한 첫 번째 시도였다. 물론 첫 시도이기 때문에 정형화라는 점에서도, 온전한 사가례를 구비했는가 하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지만, 국가례에 사가례가 규정된다는 인식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1) 가례

가례는 모든 사람을 가까이 한다는 親萬民을 표방하는 의례 범주이다. 국가례 차원에서는 국왕을 정점으로 하여 시행되는 다양한 의례가 가례에 포섭

61) 「실록오례」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범직, 『韓國中世禮思想硏究』 일조각, 1991 제2장 3절에서 검토된 바가 있다.

된다. 「실록오례」에 수록된 사항 중, 가례 범주는 세종 때 국가례로서 오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룩한 최대의 성과를 담고 있다. 〈표6〉은 필자의 해석을 반영하여 가례 의식을 재분류한 것이다.[62]

〈표6〉「실록오례」의 가례의식

	국왕	관원
대명관계	①正至及聖節望闕行禮儀	
	②皇太子千秋節望宮行禮儀	
	③迎詔書儀	
	④迎勅書儀	
	⑤拜表儀	
조정의례	⑦正至王世子朝賀儀【誕日賀附】	⑰正至誕日使臣及外官遙賀儀
	⑧正至王世子嬪朝賀儀【誕日賀附】	㉕使臣及外官拜箋儀
	⑨正至百官朝賀儀【誕日賀附】	㉖使臣及外官受上賜宣勞儀
	⑩正至會儀	㉗使臣及外官迎內香儀
	⑪中宮正至命婦朝賀儀【誕辰賀附】	㉘使臣及外官迎敎書儀
	⑫中宮正至會命婦儀	
	⑬中宮正至王世子朝賀儀【誕辰賀附】	
	⑭中宮正至王世子嬪朝賀儀【誕辰賀附】	
	⑮中宮正至百官朝賀儀【誕辰賀附】	
	⑯王世子正至百官賀儀【生辰賀附】	
	⑱朔望王世子朝賀儀	
	⑲朔望百官朝賀儀	
	⑳賀祥瑞儀	
	㉑五日朝參儀	
	㉒常參儀	
	㉓王世子與師傅賓客相見儀	
	㉔書筵進講儀	
	㉟敎書頒降儀	
일생의례	㉙納妃儀	㊱宗親及文武官一品以下昏禮
	㉚冊妃儀	
	㉛冊王世子儀	

62) 번호는 수록된 의식의 순서대로 부여하였다. 국왕이 중심이 되거나 이에서 파생한 의식은 국왕 의식으로 분류하였고, 국왕이 참여없이 진행되는 의례는 관원 의식으로 구분하였다.

	㉜冊王世子嬪儀 ㉝王世子納嬪儀 ㉞王子昏禮 ㉟王女下嫁儀	
과거의례	㊳文科殿試儀 ㊴武科殿試儀 ㊵文武科放榜儀 ㊶生員放榜儀	
양노연	㊷養老儀 ㊸中宮養老儀	㊹開城府及諸州府郡縣養老儀
기타	⑥傳香儀	㊺鄕飮酒儀

조선은 '有明朝鮮國'을 표방하였다. 명 중심의 세계질서를 인정하면서, 독자적인 조선국임을 선언한 정도의 의미이다. 명과의 관계에서는 時王으로서 명을 인정하고, 대신 조선은 親王 등급의 제후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의미를 담은 관계 설정은 별도의 법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례 중 嘉禮 범주 의식을 정리한 결과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실록오례」의 가례는 바로 이렇게 설정된 국제 질서가 명시적으로 드러난 최초의 결과물이다.

〈표6〉 대명관계로 분류한 ①-⑤까지의 의례는 명과의 관계에서 시행되는 의례이다.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賓禮로 범주화해야 할 것 같지만, 명나라의 親王國이라는 의미로 군신관계 의식을 포괄하는 가례로 정리한 것이다. 이런 분류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보다 세밀한 분석이 요구되지만, 여기서는 이들 의례에 조선의 의례 절차와 조선식 유교 음악을 사용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조선의 공간에서 진행되는 이들 의례가 조선 내부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선의 왕조 질서가 대외적으로 공인되었음을 천명하는 정치적 효과가 고려되고 있다. 이들 의례의 실행은 조선의 왕권에 대한 잠재적인 도전 세력이 감내해야 할 장애물로서 명이라는 강대국의 존재를, 먼 외국이 아니라, 현재 조선 의례 현장으로 끌어오는 장치가 되었다.

조정의례로 분류한 의례뿐 아니라 과거의례와 양노연은 대체로 조선의 朝儀로 범주화할 수 있는 의례이다. 이들은 국왕을 주체로 하여 군신관계의

표출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의례이다. 이들 의식에는 세종 때 정비된 원칙인 3품 이하 관원을 의례 현장에 먼저 위치하게 하는 先置 방식이 적용된다. 정지조하의는 왕세자(⑦)와 관원(⑨)의 의례가 구분되어 있지만, 동일 공간에서 연계되어 진행되는 의식이다. 3품 이하의 관원이 먼저 위치한 상태에서 국왕이 입장하고, 왕세자와 수행원이 입장하여 하례한다. 이들이 퇴장한 후, 2품 이상의 관원이 입장한 후, 3품 이하의 관원과 함께 관원의 하례를 진행한다.[63] 정지조하 후에 진행하는 정지회의(⑩)는 宴享 의례인데, 「실록오례」에서는 왕세손의 참여 절차를 포함하여 구성하고 있다. 왕세자만 설정한 朝賀와 왕세손을 포함한 會儀를 달리 구성한 것인데, 회의는 왕세손이 참석하는 작성 시점에서의 상황을 반영하여 설정되었다.

관원이 된다는 것은 유교 국가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왕조 질서를 수용할 때, 輔德의 지위를 얻는 것이 해당 사회에서의 성공을 뜻한다. 천명은 하늘이 수여하는 것이고, 보덕의 자리가 노력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최상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과거의례는 관원이 되는 최상위의 문·무과 시험의 합격자에게 시행되는 의식이다. 무과 의례가 고려와 달리 보강되었는데, 고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거 시험이 사회적 성공을 보장하는 장치가 된 현실을 반영한다. 양노연은 세종에 의해 강조되면서 의식이 만들어졌다. 유교적 이념을 실천해간다는 연장선상에서 구상되었지만, 세종 때는 실제로 빈번하게 양노연이 시도되었다. 이들 의례는 모두 국왕을 정점에 두고 실행되는 것이고, 유교적 군신관계의 이념을 반영한 것이다.

특별히 지적할 점은 서울을 중심점으로 하여 의례가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것이다. 조선의 기준에 의해 구획이 나누어진 지방에는 국왕을 대행하는 외관이 파견되었고, 이들이 국왕과 혹은 국왕을 대리한 사신과 어떠한 의례를 시행해야 할지를 규정한 것이 〈표6〉에서 관원 항목으로 분류한 의례이다. 서울에서 시행되는 원칙이 적용되는 조의가 지방에서도 시행됨으로써, 의례를 통해 지방의 각 지역을 조선적 질서로 일원화한 방식으로 통합하고 있다. 이들

63) 세부적인 내용은 강제훈, 2007 논문 참조.

의례가 시행됨으로써 조선 땅에서 천명을 받은 국왕의 존재가 의례의 중심으로서 구체화 되는 것이다.

왕비와 왕세자가 중심이 되는 의례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왕비와 왕세자 신분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국왕으로부터 파생된 지위이다. 이들이 의례에서 중심이 되는 이유는 국왕으로부터 지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국왕에게서 발생된 지위를 근거로 하여 파생된 의례이므로, 왕비와 왕세자 의례는 조의에 범주에 포함된다. 물론 왕비와 왕세자가 의례상으로 국왕과 차등화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이들의 신분을 상징하는 의장은 국왕 의장을 기준으로 차감되어 구성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일생의례에서 성인식에 해당하는 冠禮는 미처 작성하지 못했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일생의례 중, 혼인은 가례로 분류되었고, 장례와 제사는 각각 흉례와 길례로 규정되었다. 혼례는 국왕부터 일반 사서인의 혼례 의식을 포함하고 있다. 종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의 婚儀(㊱)는 하나의 의주만 제시되어 있지만, 이를 통해서 전체 신분층의 혼의가 기재되었다. 특정 왕조의 국가례가 해당 왕조의 전체 신분층에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 원칙인데, 「실록오례」의 경우 이러한 원칙은 혼례에서만 구현되었다. 제사와 장례에서 전체 신분층에 적용할 수 있는 의례는 수록되지 않았다. 이들 의례는 성종 때 간행된 『국조오례의』에서야 비로소 전체 신분층을 아우르는 의식의 정비가 이루어진다.

책례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책례는 ㉚冊妃儀, ㉛冊王世子儀, ㉜冊王世子嬪儀 등 세 종류의 의례가 수록되었다. 이중 왕세자 책봉례를 제외한다면, 책비의와 책왕세자빈의는 ㉙납비의와 ㉝왕세자납빈의에 부속 의례로 기재된 사항이다. 책례를 따로 수록한 이유는 책비와 책왕세자빈의를 독립해서 시행하는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왕세자가 국왕이 되면, 왕세자빈을 승격하여 책비해야 한다. 실제로 세종은 배우자를 왕세자빈으로 책빈하고, 즉위 이후 책비하였다.[64] 이런 점에서 책비와 책왕세자빈 의례를 婚儀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기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冊禮는 신분이 변동되는

64) 『세종실록』 권2, 세종 즉위년 11월 10일(병진); 『세종실록』 권56, 세종 14년 5월 11일(戊辰)

의례이다. 국왕이 신분을 전환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존재이다. 책례는 이런 점에서 신분전환 의례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⑥傳香儀는 국왕이 제사에 사용하는 향을 전달하는 의식이다. 길례의 부속 의례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실록오례」에서는 가례의 한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국왕이 하사한 향을 지방관이 수령하는 의식도 ㉗使臣及外官迎內香儀로 독립된 의례로 규정하고 있다.

2) 흉례

흉례는 천명을 받은 국왕이 사망한 이후, 왕위 계승자가 선왕의 사망을 인정하고, 점차 인간에서 귀신으로 전환되어 종묘에서 신으로 기억되는 과정까지 진행되는 의례이다. 흉례는 인간에서 신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상징한 것으로, 단계별로 살아있는 존재에게 행하는 방식으로 행례가 진행되다가 점차 神格으로 인정하면서 그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의례의 과정이다. 〈표7〉은 흉례에 표제된 의례 절차를 빈전, 산릉, 혼전의 구분을 두어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표7〉「실록오례」의 흉례 의식

빈전운영	산릉조성	혼전운영
①顧命	㉜治葬	㊽虞祭
②初終	㉝請謚宗廟	㊾卒哭祭
③復	㉞上謚冊寶	㊿魂殿朝夕上食
④易服不食	㉟(大行王妃)上謚冊寶儀	㊿①四時及臘親享
⑤戒令	㊱啓殯	㊿②四時及臘攝事
⑥沐浴	㊲祖奠	㊿③朔望及俗節親享
⑦襲	㊳遣奠	㊿④朔望及俗節攝事
⑧奠	㊴發引班次	㊿⑤山陵四時及臘正至俗節祭
⑨爲位哭	㊵發引	㊿⑥山陵親行別祭
⑩擧臨	㊶路祭	㊿⑦迎賜謚祭及弔賻
⑪含	㊷遷奠	㊿⑧賜賻
⑫設冰	㊸立主奠	㊿⑨賜謚
⑬靈座	㊹返虞班次	㊿⑩焚黃
⑭銘旌	㊺返虞	㊿⑪賜祭

⑮告社廟 ⑯小斂 ⑰奠 ⑱治椑 ⑲大斂 ⑳奠 ㉑成殯 ㉒奠	㊻安陵奠 ㊼山陵朝夕上食	㊷練祭 ㊸祥祭 ㊹禫祭 ㊺祔廟 ㊻題位版 ㊼附文昭殿
㉓廬次 ㉔成服 ㉕服制 ㉖嗣位 ㉗頒敎書 ㉘告訃請謚請承襲 ㉙朝夕哭奠及上食 ㉚朔望奠【正至俗節別奠同】 ㉛議政府率百官進香		

세종 때는 국상 의례가 현안으로 다가왔다. 1419년(세종1) 정종의 국상에 이어, 원경왕후와 태종의 국상이 이어졌다. 이들에 대한 흉제례는 허조가 주장하는 古制의 방식으로 절차가 구성되었다가, 1440년(세종22) 허조 사망 후에는 명의 시제에 따라 無拜禮의 방식으로 길례 구성이 개정되었다. 1444년(세종26) 시작된 오례 정리 작업의 흉례는 개정된 방식을 따랐고, 1446년(세종28) 세종비 소헌왕후의 국상에도 이 원칙이 적용되었다.

「실록오례」에 수록된 흉례의 내용 구성은 국왕의 국상을 기준으로 의례가 진행되는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65] ㉟上謚冊寶儀는 국왕보다 먼저 왕비가 사망한 경우에 진행되는 의례 절차인데, 이 시점까지 조선에서는 국왕보다 왕비가 먼저 사망한 경우가 빈번하였다. 태조와 태종, 세종 모두가 왕비가 먼저 사망한 경우였기 때문에, 흉례를 정리하는 시점에서 왕비가 먼저 사망한 경우의 의례 절차가 심각하게 고려되었다. 왕비가 먼저 사망한 父在爲母喪을

65) 조선시대 국왕의 죽음부터 부묘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이욱, 『조선시대 국왕의 죽음과 상장례』 민속원, 2017에서 소상히 정리하였다.

朞年으로 하는 원칙이 큰 논란 없이 정립되기도 하였다. 이 경우도 여러 이설이 있었지만, 세종이 모후인 원경왕후를 위해 기년의 원칙을 시행했기 때문에[66], 이를 부정하는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려웠다.

국상이 발생하면, 세 공간에서 의례가 진행된다. 첫째는 빈소가 차려지는 빈전 의례이다. 빈전은 통상 5개월 유지되고, 이 기간에 산릉을 조성하였다. 둘째는 山陵을 조성하고 梓宮을 산릉에 안장하는 장례 의례이다. 셋째는 산릉을 조성한 이후 혼을 모시고 돌아와서 魂殿을 마련한 후, 혼전에서 시행되는 의례이다. 혼전과 산릉에서는 동시에 의례가 진행되다가, 종묘에 신주를 부묘하면서, 흉례는 길례로 전환된다. 흉례가 길례로 전환되는 기간은 사망한 만 일 년이 경과한 후 ㊷練祭, 만 이 년 경과 후 ㊸祥祭를 시행하고, 이로부터 삼 개월이 지난 후 ㊹禫祭를 시행하는 시점까지인데, 만 27개월이다. 햇수로는 삼년이 소요되므로 통상 삼년상이라 지칭하는 것이다.

혼전은 길례로 전환되면서 폐지되어야 하지만, 조선에서는 원묘를 설치하여 추모의례를 진행하였다. 세종은 국왕마다 혼전을 조성한 후, 혼전이 원묘로 전환될 경우 번잡할 것으로 판단하여 통합 원묘로서 文昭殿을 조성하였다. 국왕과 왕비의 신주가 혼전에서 의례의 대상이 되었다가 종묘로 옮겨지면, 신주와 별도로 위패를 제작하여 문소전에 모시고, 혼전은 폐지하는 것이 세종이 정한 원칙이었다. 따라서 「실록오례」의 흉례는 이러한 세종의 구상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었다.

①-㉒까지는 시신을 의례적으로 처리한 후 빈소를 차리는 과정이다. 빈전에서는 奠禮가 시행된다. 혼전에서는 祭禮가 시행되면서, 혼전을 거친 이후 길례로 전환되는 과정을 준비하게 된다. 빈전의 전례는 생시의 잔치에 준하여 시행되는 의례로 대상이 사망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생전의 모습을 반영한 형태이다. 반면에 제례를 시행하는 혼전에서는 생전과 차별되는 神道의 원칙을 적용한다. ㉓-㉛까지는 천명의 계승자가 선왕에 대해 主喪의 의례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과정이다. 일반인의 장례와 구분되는 지점은 ㉖嗣位와 ㉗頒敎書의 의례이다. 국왕은

66) 『세종실록』 권10, 세종 2년 11월 27일(辛卯)

단순한 상주가 아니라 왕위계승자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사위의 절차와 국왕으로서 교서를 반포하는 의례가 진행된다. 국왕으로 지위를 확인하는 의례를 진행한 왕위계승자는 ㉘告訃請謚請承襲을 통해 명에게 이미 실현된 국왕의 지위를 추인해 달라고 요청한다. 대외적으로 국왕의 지위를 인정받는 의례 절차이다.

㉜治葬부터는 산릉을 준비한 후, 빈전에 모셔진 시신을 산릉까지 운반하여 매장하고, 관련 의례를 시작하는 과정이다. ㊸立主奠에서 ㊺返虞까지는 혼전의 의례를 준비하는 절차이다. 국왕의 시신인 體魄은 산릉에 매장되었고, 魂은 따로 虞主에 모셔서 돌아오는 의례인데, 이때 제작된 우주는 祥祭가 시행될 때까지 의례를 시행하는 대상물이 된다.

㊽虞祭부터는 혼전이 조성된 이후의 의례이다. 혼전이 유지되는 기간에도 산릉에서의 흉례가 진행되기 때문에 ㊺山陵四時及臘正至俗節祭와 ㊻山陵親行別祭가 표제로 정리되었다. 계절에 따른 제사와 명절에 맞춘 의례는 종묘 및 혼전에서도 병행된다. 따라서 ㊺의 산릉 의례는 친행하지 않는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조성된 산릉에는 국왕이 직접 방문하여 제사하기도 했는데, ㊻山陵親行別祭는 국왕의 산릉 친행을 규정한 것이다. 혼전에서의 의례에는 외국에서 조문하는 절차와 길례로 전환되는 마지막 단계의 과정을 함께 수록하고 있다.

흉례는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왕의 장례 절차를 사망 시점부터 산릉을 조성하고, 혼전을 운영한 이후, 신주를 종묘에 부묘하고, 위패를 문소전에 모시는 전체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단일 국상으로서는 완결성을 갖추었지만, 국가례의 흉례로서는 충분하지 않은 내용이다. 국가례로 기능하기 위해서 흉례에는 관원과 일반 백성의 의례가 포함되어야 한다. 국왕의 경우로 한정하더라도 선왕에 대한 의례만이 아니라 왕비의 부모나 친족에 대한 상례가 미비되었다. 따라서 「실록오례」의 흉례는 왕위계승자가 진행하게 되는 국상 절차만을 가까스로 정리한 상태에 머물고 말았다.

국왕의 국상이 정리되어야 이를 기준으로 차감하여 다른 신분의 상·장례를 설정할 수가 있는 것인데, 「실록오례」의 경우는 국왕(혹은 왕비)의 단일 국상 절차만 정리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국왕의 존·비속과 외가 등에 대한 상·장례 절차를 설정하고, 이를 차감하여 신민의 해당 의례를 정비하는 작업은 성종

때 간행되는『국조오례의』단계에서 마무리되었다.

3) 빈례와 군례

빈례와 군례는 의식 종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묶어서 정리한다. 빈례와 흉례 구성에서의 대전제는 명과의 관계를 군신 관계의 틀로 설정한 것이다. 〈표8〉은 빈례와 군례의 구성 의식을 정리한 것이다. 표제 의식은 빈례의 경우는 여섯 종류, 군례는 여덟 종류에 불과하다.

〈표8〉「실록오례」의 빈례와 군례 구성

빈례	군례
①宴朝廷使	①射于射壇
②王世子宴朝廷使	②觀射于射壇
③宗親宴朝廷使【議政府六曹宴附】	③大閱
④受隣國書幣【受諸島及諸衛酋長書幣附】	④講武
⑤宴隣國使【宴諸島及諸衛酋長附】	⑤吹角
⑥禮曹宴隣國使【宴諸島及諸衛酋長附】	⑥救日食【京外官救食附】
	⑦季冬大儺
	⑧鄕射

빈례는 국가간의 외교 관계를 포괄하는 의례인데, 명과의 관계가 가례로 정리된 점에 주목해야 한다. 명과 조선 사이의 공식적인 의견 교환은 군신 관계에 준하여 처리하기로 정리한 것이다. 원-고려 관계를 전제로 조선은 이전보다는 상향된 친왕 등급을 인정받는 선에서 양국 관계의 기본 틀을 수용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국서를 교환하는 의례는 군신 관계로 정리하면서, 조선 국왕이 명의 사신과 상응하는 지위로 접대하는 의식만을 빈례로 정리하였다.

일본과 유구로 사실상 한정된 외국과의 접촉 의례가 실질적인 빈례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조선과 접촉하는 일본의 다이묘와 여진의 추장은 부속 의례로서 분류하였다. 신분제 체제로 국제 질서를 이해하는 조선의 세계관이 반영된 것인데, 명을 時王으로 설정하고, 여타의 국가는 시왕에 포섭된 제후, 혹은 그에 준하는 지위로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조선의 통치 대상도 아니고, 실질적인 교섭도 이루어지지만, 대등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일본과 여진의

여러 세력을 부속 의례로 처리하였다. 조선이 명과의 관계를 군신 관계로 정리한 것과 유사하게 이들을 조선의 군신 관계 틀에서 수용하였다.

군례의 경우는 단독으로 전쟁 수행을 하지 않는 친왕의 지위를 고려하여 의식 구성에서 정벌전을 배제하였다. 그러나 서례의 정리에는 세종 때 이루어진 군비와 관련된 정비 작업이 반영되어 있다. 서례의 射器 항목은 ①射于射壇과 ②觀射于射壇의 의례와 관련되어 있다. 일반 관원이 시행하는 ⑧鄕射와 대응되는 국왕의 활쏘기 의례이다. 직접 국왕이 활을 쏘는 의식과 관원들의 활쏘기 경쟁을 관람하는 의례로 구성되었는데, 활쏘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유교적 이념을 반영하여 구성된 의례이다.

③大閱, ④講武, ⑤吹角은 세종 때 실제로 병력을 동원하여 훈련하고 지휘하는 절차를 의례로 정리한 것이다. 세종 때 전시 및 훈련 상황에서 병력을 움직이는 진법을 작성하였다.[67] 진법은 실제로 병력을 운용하는 측면이 강했던 반면, 군례는 의례의 관점에서 군사 관련 사항을 수렴한 것이다.

서례 항목 중 兵器는 편전과 같이 특수한 살상 목적으로 조선에서 독자적으로 운용한 화살촉과 세종 때 집중적으로 개량된 총통을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생략하고 있지만, 군례의 체제에는 세종 때 여진과 교전을 진행하고, 명을 잠재적 군사적 상대국으로 설정하여 진행된 군비의 정비 작업이 반영되어 있다.

빈례와 군례는 개인이 수행할 수 없는 국가 차원의 의례 범주이다. 그러나 조선의 오례 정비가 친왕 등급의 국가례 정비를 목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빈례와 군례는 '有明朝鮮國'으로서 친왕 지위로 자신을 한정한 조선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

67) 대열의주 및 진법 관련 훈련에 대해서는 소순규, 「조선초 大閱儀의 의례 구조와 정치적 의미」, 『사총』 75, 2012 참조. 군례에 적용되는 음악에 대해서는 이숙희, 「조선조 군례에 사용한 음악의 종류와 성격」, 『한국음악연구』 32, 2002 참조.

5. 『세종실록』「오례」 편집과 新樂 창제

1) 음악의 정비와 의례 절차의 재조정

「실록오례」는 조선에서 오례를 갖추어 독자적으로 친왕 수준의 국가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첫 성과였다. 「실록오례」에서, 조선 나름의 특성이 반영된 국가 의례를, 오례로 분류하고, 의식과 서례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향후 의례 정비의 주요한 디딤돌로서의 성과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미 기존의 연구를 통해 이렇게 정리된 체제와 저술의 완성도가 아직은 미흡하다는 점이 밝혀졌다.[68]

國家禮로서 오례를 갖추고자 하면, 조선의 질서 체제 안으로 일체의 私家禮를 포섭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정비되어야 한다. 태조 즉위교서에서 관혼상제를 경전에 근거해서 실천한다고 선언했는데, 「실록오례」는 이에 대한 대답의 의미도 있었다. 이를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문에서 관례가 아직 검토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었다. 이런 문제의식을 고려할 때, 일반 관원과 서민에 대한 유교식 제사 방식이 제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의 「실록오례」 길례 부분은 태종 때 성과로 대체되면서, 정비된 결과를 파악할 수 없다.

현재까지의 통설에 의하면, 친영을 주요 절차로 설정하는 유교 婚儀는 조선에서는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방식이었다.[69] 그러나 「실록오례」는 일생의례의 영역 중 이 부분을 선언적으로 정비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흉례는 국왕과 왕비, 왕자, 세자빈, 국왕의 처부모 등 다양한 의례 경험을 축적하였으나, 「실록오례」에서는 국왕과 왕비에 대한 의식 절차만을 정리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실록오례」는 私家에서 일생의례를 유교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점에서도 갈 길이 멀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척과 변효문 등 집현전의 관원이 왜 이렇게 미완의 상태에서 연구를 멈추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실록오례」의 서례는 매우

68) 강제훈, 「조선 『世宗實錄』 「五禮」의 편찬 경위와 성격」, 『사학연구』 107. 2012
69) 최재석, 『한국의 가족과 사회』 경인문화사, 2009, 제1부 제4장 및 장병인, 「조선전기의 혼인제도와 여성의 지위」『역사비평』 27, 1994 참조.

미비된 자료이다. 다음 〈표9〉는 서례의 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표9〉「실록오례」 서례 항목

	항목
길례	辨祀, 時日, 壇壝, 神位, 祝版, 幣帛, 祭器圖說, 饌實圖, 牲牢, 樂器圖說, 樂懸圖, 齋戒, 獻官, 冠冕
가례	冠冕〈길례참조〉, 鹵簿, 輿輦, 樂器, 樂懸圖, 尊爵, 執事官〈내용없음〉, 排班圖, 樂章〈내용없음〉
빈례	尊爵〈가례참조〉, 樂器〈가례참조〉, 執事官〈내용없음〉
군례	兵器, 射器, 執事官〈내용없음〉
흉례	喪服, 明器, 服玩, 車輿, 吉仗〈가례노부 참조〉, 凶仗, 執事官〈내용없음〉

태종 때의 자료인 길례를 제외할 경우, 나머지 四禮의 서례에서 필수적인 항목이 누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의례를 담당하는 집사관 항목은 내용이 생략되었다. 길례의 서례가 태종 때, 정리된 사실을 고려한다면, 四禮의 서례가 매우 부실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각 의례의 공통 요소를 추출하여 의주의 작성을 용이하게 한다는 서례 작성의 기본적인 목적에도 충실하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로 제출된 자료가 의정부에 전달된 뒤에도 작업이 진전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의외다. 허후와 정인지가 책임을 맡았고, 검상조례사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이 상태로 『세종실록』에 수록되었다. 보완 작업의 유무와 상관없이 정리 작업을 진행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세종대 중점적으로 진행된 음악의 정비가 주목된다.

태종은 종묘와 조회, 연향의 음악이 각각 계통이 다르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태종이 생각한 방향은 이들 의례에 모두 아악을 사용하는 것이었다.[70] 세종이 즉위한 이후에는 정비의 지향이 조정되었다. 세종은 '우리는 본래 향악이 익숙한데, 종묘에서 당악을 먼저 연주하다가 삼헌 단계에서야 향악을 연주하고 있다. 조상들이 평소 듣던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71] 그런데 이러한 인식을 드러냈음에도 세종대 음악 정비는 이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

---

70) 인용문 가3)
71) 『세종실록』 권30, 세종 7년 10월 15일(경진)

1427년(세종9) 종묘에서는 향악을 쓰지 말도록 하였고, 원묘로 운영되던 문소전과 광효전에서는 終獻에만 향악을 사용하도록 제한하였다.[72] 그리고 원단・사직・풍운뢰우・석전 등 광범위한 국가 제사에서 향악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73] 국가 제사에 향악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전체적으로는 아악을 쓰는 用樂의 원칙을 정한 것이었다. 이 무렵 조선에서는 본격적으로 아악 정비 작업에 착수하였다.

조회의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하면서, 1431년(세종13)에는 개정된 절차에 더하여 새로 정비한 아악을 사용하였다.[74] 아악의 적용은 단순히 음악만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의례의 음악을 行禮樂・出入樂・食擧樂 등 의례의 절차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병행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조선의 의례와 음악은 이전과는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변화하게 되었다. 아악의 적용 범위는 점차 宴享에까지 확대되었다.

> 나1) 처음에 중국의 黃鍾의 磬音을 기준으로 하여 三分損益 방식을 써서 12율관을 만들었다. 겸하여 甕津에서 생산되는 검은 기장으로 校正하고 南陽에서 나는 돌로 만들어 보니, 聲律이 부합하였다. 드디어 그것으로 종묘와 조회 때의 음악을 제작하였다.[75]

> 나2) 처음에 雅樂을 만들 때 나는 다만 朝儀에만 설치하고자 하였을 뿐, 회례에까지는 적용할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요청에 따라 회례 악기와 공인의 冠服과 문・무 두 가지 춤에 쓸 기구도 또한 제조하게 하였으므로, 사세가 그만둘 수 없게 되었다.[76]

나1)은 1427년(세종9) 박연이 석경을 제작했다는 기사에 부기된 내용이다. 제사와 조회의 음악을 제작하였다는 간단한 사실을 기술한 것이다. 나2)는 1432년(세종14) 세종이 언급한 내용을 전하는 기록이다. 한창 아악의 정비

72)『세종실록』 권38, 세종 9년 12월 21일(甲戌)
73)『세종실록』 권39, 세종 10년 1월 4일(정해)
74)『세종실록』 권5, 세종 13년 1월 1일(병인)
75)『세종실록』 권36, 세종 9년 5월 15일(임인)
76)『세종실록』 권55, 세종 14년 3월 28일(정해)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시점인데, 이 무렵에는 회례에 적용할 아악의 원칙과 방식을 정하고 있을 때였다. 그런데 세종 자신은 회례까지 아악을 쓸 생각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회례 음악을 아악으로 전환하는 요청이 있었고, 점차 이와 관련된 작업이 진행되면서, 결국 회례에 아악을 적용하는 데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1433년(세종15) 아악이 적용된 회례가 설행되었다.[77]

새로 아악이 정비되면서, 그 적용의 범위가 제사·조의·연향으로까지 확대되었는데, 이런 방향성은 태종이 원래 의도했던 아악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사를 실현해 가는 것처럼 보인다. 어쨌든 회례 아악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별도의 포상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78] 이런 와중에도 세종은 여전히 중국의 음악을 쓰고자 하여 향악을 전부 폐기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자신의 음악관을 드러내기도 하였다.[79] 어쨌든 세종 때의 아악 정비는 단순히 아악의 선율을 채택하는 작업이 아니었다. 이 작업은 의식 절차와 짝을 이루는 용악에 대한 검토였다. 의식 종류에 따라 선율과 가사, 춤의 적절한 조합을 모색하는 과정이었다.

처음 아악의 정비 작업은 음을 교정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제사에 사용하던 아악의 음 자체에 일관성이 없다는 사실이 파악되었고, 음을 교정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80] 중국의 편경을 기준으로 음을 정하는 것인데, 명에서 받아온 경의 음이 제대로 조율된 상태가 아니었다. 결국, 중국 경의 기본음인 黃鍾을 기준으로 하여, 조선의 황종관을 제작하였다. 황종관에 삼분손익법을 적용하여 12음을 소리내는 12율관을 만들고, 이를 기준으로 편경 작업을 진행하였다. 나1)에 의하면 1427년(세종9) 한 옥타브 내의 石磬을 완성하였다. 이를 확대하여 제작하여 1428년 여름에는 각종 제사에 쓸 편경과 등가에 사용할 특경을 합하여 528매가 완성되었다.[81]

77) 『세종실록』 권59, 세종 15년 1월 1일(을묘)
78) 『세종실록』 권59, 세종 15년 1월 7일(신유)
79) 『세종실록』 권53, 세종 13년 8월 2일(갑오)
80) 『세종실록』 권47, 세종 12년 2월 19일(경인). 이 기사는 편종에 대한 내용인데, 조선의 286과의 편종 중에 136과는 음이 틀려서 새로 제작하기로 결정하는 내용이다. 편경과 함께 음의 기준을 잡는 편종도 제대로 조율되지 않은 실정이었다.
81) 『세종실록』 권59, 세종 15년 1월 1일(을묘)

처음 황종관을 제작하고, 이를 근거로 전체적인 음계를 재조정한 후, 기준이 되는 악기를 다시 제작하고, 이를 편제한 樂懸도 개편하였다.[82] 제사악을 당상과 당하로 구분하고, 당상 등가와 당하 헌가에서 연주하는 내용을 조정하였다. 군주와 관원을 구분하였고, 출입악과 행례악, 식거악 등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하였다.[83] 제사에서는 당상에 등가를 두어 노래에 중점을 두고, 당하에는 헌가를 두어 악기의 연주가 중심이 되도록 하였다. 문무와 무무를 두어 등가와 헌가에 조응하여 춤을 추도록 하였다.

조회악을 정비하면서 조회에 적용되는 악대는 헌가로 한정하였다.[84] 조회악을 정비하면서도 이에 맞추어 악기와 악대를 다시 제작하였다.[85] 이 과정에서 출입악은 국왕에게만 적용하고, 관원들에게는 행례악만 사용하는 것으로 용악 원칙이 정리되었다.[86] 조회에서는 전정의 헌가만이 설치되었고, 춤과 노래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등가를 사용하지 않았다. 관원의 행례악도 拜禮에만 연주되었다. 이렇게 조회악이 정리되면서, 국왕의 출입시에 사용되는 隆安樂을 제례에도 통용하도록 결정되었다.[87]

조회악의 정리가 일단락된 후에는 바로 회례 의식이 정비되면서 연향악에 대한 검토가 이어졌다. 이때도 회례용 악기가 새로 제작되었다.[88] 연향 의식인 회례에 '향악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결단코 불가하다.'는 국왕의 의사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89] 향악이 유지되기는 하였지만,[90] 회례의 용악은 아악을 중심으로 일신되었다.[91] 회례는 음악의 사용이 조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당상에 등가를 두어 노래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82) 악대에 대한 연구로는 김종수, 「朝鮮前期 雅樂 樂懸에 대한 연구」, 『한국음악연구』 15·16, 1986 참조.
83) 『세종실록』 권50, 세종 12년 10월 4일(신미)
84) 『세종실록』 권49, 세종 12년 9월 21일(기미) '一朝會之樂, 堂上堂下一時竝奏 右條 一依陳氏禮書, 朝賀只用軒架'
85) 『세종실록』 권49, 세종 12년 7월 30일(무진)
86) 『세종실록』 권50, 세종 12년 윤12월 23일(기미)
87) 『세종실록』 권51, 세종 13년 1월 6일(신미)
88) 『세종실록』 권52, 세종 13년 6월 15일(정미)
89) 『세종실록』 권53, 세종 13년 8월 2일(갑오)
90) 『세종실록』 권54, 세종 13년 10월 3일(갑오)
91) 『세종실록』 권59, 세종 15년 1월 1일(을묘)

마당의 당하에 악기만으로 편제된 헌가를 두었다. 마당에서는 문무와 무무를 추어 흥을 돋우도록 고려되었다. 태조를 송덕하는 武舞와 태종을 기리는 文舞를 회례용으로 새로 설치하고, 각각 노랫말인 악장을 제작하기로 하였다.[92] 이 과정에서 헌가에 악장을 노래하는 歌工을 두도록 결정되었다.[93]

그런데 당상과 당하에 악대가 설치되고 문·무무가 적용되는 제례악으로 이러한 결정을 확대하는 문제가 검토되었다. 원묘인 문소전과 광효전의 의례에 노랫말을 짓기로 하였고, 초헌에는 당악, 아헌에는 향악, 종헌에는 향당악을 교주하도록 연주 방법이 조정되면서, 종헌의 악곡은 「정동방곡」으로 결정하였다.[94] 검토는 종묘에까지 확대되었다. 종묘의 아·종헌과 武舞에 가사가 없으므로, 회례악에 근거하여 가사를 짓고 歌工을 두는 문제를 검토하였다.[95] 이런 검토는 최종적으로 무무에 해당하는 노랫말인 악장을 두되, 노래하는 가공은 두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96] 악장이 있는데, 가공이 없는 상황이 적절한지 논란이 있었지만,[97] 고제의 검토에 근거하여 이렇게 결론지었다. 그리고 무무의 악장이 제작되었다.[98]

제사악에서 시작된 아악의 정비는 조회악과 회례악으로 검토가 이어지면서, 새롭게 악기와 악대가 제작되고, 악장과 문·무무가 추가되는 등의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개정은 당연히 의례의 실제 시행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99] 변화는 단순히 의례 절차만에 국한하지 않았다. 각 절차에 적용되는 음악의 문제가 검토되면서, 의례의 세부적인 영역까지 그 의미와 실행 방식이 재검토되는 과정이었다.

태종 때의 의례 논쟁은 주로 절차를 구성하는 데 집중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92) 『세종실록』 권56, 세종 14년 5월 7일(갑자)
93) 『세종실록』 권57, 세종 14년 9월 3일(무오); 『세종실록』 권58, 세종 14년 10월 10일(을미)
94) 『세종실록』 권58, 세종 14년 10월 17일(임인)
95) 『세종실록』 권59, 세종 15년 1월 7일(신유)
96) 『세종실록』 권60, 세종 15년 6월 28일(己酉)
97) 『세종실록』 권60, 세종 15년 5월 27일(기묘)
98) 『세종실록』 권62, 세종 15년 12월 23일(임신)
99) 정지회례는 정지조하에 이어서 진행되는 의례이다. 그런데 조하에는 전정에 헌가가 배치되고 회례에는 등가와 헌가가 배치되는데, 이때의 헌가는 歌工이 배치되는 등 조하헌가와 구성이 다르다. 또한 문·무무가 추가되므로, 조하와는 완전히 구분된 의식으로 시행된다.

제사의 작헌 절차에 拜禮를 둘 것인가가 논쟁 주제가 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절의 유무 논쟁이지만, 유교 의례가 周制를 모델로 설정하면서도, 현실의 시행 가능한 의례로 당·송 이래의 古制에 방점을 둘 것인지, 시왕의 제도로서 명의 時制를 적용할 것인지, 인식의 차이에 근거한 논쟁이었다. 세종 때 음악을 적용하는 문제가 검토되면서, 음악과의 조응이라는 시각에서 각 의례의 세부적인 절차가 전면 재검토되었다. 명나라의 악기 자체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음악 이론을 재검토하여 기준음을 다시 정하고 음계와 선율을 조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악기가 제작되고, 악대도 전면적으로 수정되었다. 이른바 新制雅樂이 적용되면서, 제사와 조회 의식의 세부적인 절차가 전면적으로 갱신되었다.[100] 의례적으로 세종의 중기는 고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시기인데, 음악적인 면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2) 신악 제정과 오례 정리의 失路

1447년(세종29) 그동안 진행되었던 아악 정비의 방향이 급선회하는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른 바 신악의 제정과 운용이 선포된 것이다.[101] 「용비어천가」를 의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세종 자신이 직접 시험하였는데,[102] 의정부에서는 「용비어천가」에서 파생된 여민락·치화평·취풍형 등을 제례만이 아니라 조회와 연향에서도 쓰도록 건의하였다.[103] 건의가 수용되면서, 의례에서 신악을 적용해야 하는 새로운 숙제가 만들어졌다. 이때 새로 제작된 보태평·정대업 등은 악·가·무로 구성된 새로운 음악 체제였다. 1449년(세종31) 新樂과 함께 기존의 舊樂 중에서 종묘, 조회, 연향에 적용할 악곡이 선정되었다.[104] 음악의 개정은 이에 수반하여 의례 진행에 변화가 병행되는 것이므로, 제사와 조회, 연향 등 국가

100) 『세종실록』 권51, 세종 13년 1월 1일(丙寅), 해당 기사는 신제아악이 적용된 朝賀가 완전히 새롭게 일신된 의례인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신제아악이라는 표현은 『세조실록』「악보」에서 아악을 정리하는 일반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101) 아악 정비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세종의 의도와 음악 정신에 대해서는 장사운, 「세종대왕의 음악정신」『제12회 동양학학술회의록』(단대 동양학연구소), 1982 참조.

102) 『세종실록』 권116, 세종 29년 5월 5일(을미)

103) 『세종실록』 권116, 세종 29년 6월 5일(을축)

104) 『세종실록』 권126, 세종 31년 10월 3일(庚戌)

의례 전반에 걸친 수정이 불가피한 결정이 거듭 확인되고 선포된 것이다.

세종대의 음악 개정 작업은 『세종실록』「오례」에 이어, 『세종실록』 권136에서 권147에 「악보」로 수록되었다.[105] 권136에 아악보서가 있는 것과 별개로 권138에 간단한 서문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고취악으로 受寶籙・夢金尺・覲天庭・受明命이 있었는데, 이들 곡으로는 나라를 세운 업적을 제대로 담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세종이 고취악과 향악을 근거로 새롭게 신악을 제정하였다. 신악은 정대업・보태평・발상・봉래의 등이다. 권138에서 권144까지 수록된 곡이 신악이라는 것이다. 권145와 권146은 기존의 악곡 중에서 계속 사용할 음악을 기재한 것이다. 그리고 권147에는 악장이 수록되었는데, 아악 악장과 함께 장문의 「용비어천가」 악장을 싣고 있다.[106]

〈표10〉『세종실록』「악보」 구성

권	내용
136	아악보서, 아악12궁7성 용28성도, 악보목록, 아악보(朝會)
137	아악보(祭祀), 의례경전통해 詩樂(小雅, 周南國風), 원조임우大成樂譜
138	定大業之舞악보, 保太平之舞악보
139	發祥之舞악보
140	鳳來儀(與民樂보, 致和平보 上)
141	봉래의(致和平보 中)
142	봉래의(致和平보 下-상)
143	봉래의(致和平보 下-중)
144	봉래의(致和平보 下-하)
145	醉豐亨보 上・下
146	鳳凰吟, 滿殿春
147	社稷樂章, 宗廟樂章, 영녕전, 風雲雷雨山川城隍, 先農, 先蠶, 雩祀, 文宣王釋奠, 纛祭, 文昭殿 龍飛御天歌(서, 1-125장)

『세종실록』「악보」는 박연이 주축이 되어 진행된 아악의 정리 작업을 권136과 137에 수록하고, 이와 별도로 권138에서 144에 걸치는 분량을 세종이 창제했다는 신악에 할애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신악의 비중이 높은 것이다.

105) 『세종실록』 권136,
106) 「용비어천가」의 악장 구성에 대해서는 김승우, 『용비어천가의 성립과 수용』 보고사, 2012, 제3장 참조.

국가가 주관하여 개정하는 음악은 음악 그 자체로 향유되는 것이 아니라, 의례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세종 말년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새로운 국가 음악 체제의 선포는 오례 정리 작업에 심각한 난점이 되었다. 「용비어천가」를 핵심으로 하는 제례악과 이에서 파생된 봉래의가 조회와 회례에 적용되어야 했다.[107] 이는 빈례와 군례 의식에도 사용될 것이었다.

「실록오례」의 가례 서례 악현도는 조회와 회례를 구분하여 편집하였다. 그러나 여기 수록된 악현도는 1433년(세종15)까지의 결정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신악의 제정과 적용이 선포된 이후, 이를 반영한 악현도는 생략되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직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미정인 상태였다. 따라서 오례 정리를 지시받은 집현전의 관원도, 이들의 작업 결과를 넘겨받은 의정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항을 더 진척할 수 없었다. 세종대를 거치면서 예악의 정비에서 한 축을 이루는 음악 부분이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되었다.[108] 그런데 음악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가 선언됨으로써 의례의 정비도 사실상 진전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다음의 사실에 주목하면, 오례의 편집자들이 신악의 등장으로 받았을 충격을 짐작할 수 있다. 회례의식은 양로연을 비롯한 각종의 공식 연향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 의식은 가례만이 아니라 군례의 射于射壇儀에도 후반부에 연향 의식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파급 범위가 적지 않았다. 이들 연향의 용악에 아악을 주로 할 것인지, 향악을 주로 할 것인지는 전혀 다른 지향을 가진 것이었다. 관원들이 대거 참여한 아악의 정비 작업은 향악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이지만, 이에 대비되어 세종은 조선의 습속에 방점을 두고 향악에 대해 다른 판단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109] 〈표11〉은 세종 13년의 회례 의식과 「실록오례」의 같은 의식을 用樂을 중심으로 비교한 것이다.

---

107) 봉래의에 대해서는 송지원, 「『세종실록악보』〈봉래의〉의 음악적 구현」, 『진단학보』 135, 진단학회, 2020 참조.
108) 강제훈, 「조선 초기 종묘 親享儀의 禮樂 구성」, 『한국사학보』 86, 고려사학회, 2022, 133-136면.
109) 장사운, 『증보 한국음악사』 세광음악출판사, 1986, 224-229면 참조.

〈표11〉회례 用樂의 비교

	세종13년 정지회의			「실록오례」 정지회의		
	절차	용악	악대	악대	용악	절차
	국왕입장	융안	헌가	軒架	隆安	국왕입장
헌수	왕세자拜	서안		軒架	舒安	왕세자拜
	왕세자致詞					왕세자致詞
	국왕擧爵	휴안〈月律〉	헌가	軒架	休安〈月律〉	국왕擧爵
	왕세자배	서안		軒架	舒安	왕세자배
헌수	종친・문무관拜			軒架	舒安	왕세손・종친拜
	의정致詞					왕세손致詞
	국왕擧爵	휴안	헌가	軒架	休安	국왕擧爵
	종친・문무관拜	서안		軒架	舒安	왕세손종친拜
주3행 /헌수	進案-進花	휴안		軒架	舒安	문무관・객사拜
	歌者・琴瑟就位					의정致詞
	進食	수보록	헌가	軒架	休安	국왕거작
	제3작	- 文舞入作,三成止出	등가	軒架	舒安	문무관・객사拜
주4행	進食	근천정	헌가	軒架	休安	進饌案
				軒架	休安	進花
				軒架	受寶籙	進湯
	제4작	-	등가	登歌	文明曲 文舞入,作六變止	제4작
주5행	進食	海瑞	헌가	軒架	覲天庭	進湯
	제5작	- 武舞入作,三成止出		登歌	荷皇恩 文舞作,六變止出	제5작
주6행	進食	瑞鷓鴣		軒架	受明命	進湯
	제6작	荷皇恩之伎		軒架	武烈樂 武舞入作,六變止出	제6작
주7행	進食	水龍吟		軒架	覲天庭	進湯
	제7작	抛毬樂之伎			※用俗樂雜伎	제7작
주8행	進食	黃河淸				
	제8작	牙白之伎				
주9행	進食	萬年歡				
	제9작	舞鼓之伎				
대선	進大膳	太平年, 歌「靖東方」			-	進大膳
예필	왕세자이하拜	서안	헌가		舒安	
퇴장	국왕퇴장	융안	헌가		隆安	

여기서는 의례 절차 구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지는 않겠다.[110]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431년(세종13) 새로 제정된 회례의식은 아악을 적용한 것이다.[111]

〈표11〉에 정리된 것처럼 제5작까지는 아악의 헌가와 등가 악대가 연주하고, 아악 악장과 문·무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제6작부터는 당시 정리한 아악이 아닌, 속악에 해당하는 당악과 향악을 망라하는 악곡과 女妓가 동원된 춤이 연행되었다. 1431년 사용된 악·가·무는 공식적인 연향의 음악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 이듬해 대대적으로 수정되었지만, 속악의 악곡을 사용하는 원칙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졌다.[112]

「실록오례」의 정지회의 의주는 신악이 반포되기 이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신악 관련 사항은 일체 반영되고 있지 않다. 「실록오례」는 왕세손을 절차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1431년 의주의 제6작이, 여기서는 제7작으로 밀려났다. 따라서 「실록오례」의 제7작 이후의 절차가 1431년 의주의 제6작에 조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의주를 정리할 때, 음악을 표기하는 방식이 주목된다. 『세종실록』 기사에 등장하는 회례 의주는 악곡과 춤, 심지어 악장의 종류까지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실제의 의례에 적용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된다. 실무자가 참조할 의주이기 때문이다. 「실록오례」 정지회의는 회례를 진행할 실무자의 시선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기록이다. 서례에는 아악기로 편성된 헌가와 등가, 문·무무를 수록하고 있다. 의주에서도 제7작 이후에 '俗樂과 雜妓를 사용한다.'로 기술했을 뿐이다. 기록을 정리한 편집자들은 아악에 대해 편중된 시선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속악과 관련 음악에 대해서는 의례상의 쓰임에 부합하는 기록상의 배려와 접근 장치를 일체 배제하고 있다.

신악의 선포는 의례와 음악의 관계가 완전히 역전되는 선언이었다. 제사와 조회, 연향, 그리고 이에서 파생되는 각종의 국가 의례는 이 시점까지 의례의 절차가 세밀하게 검토되면서, 새로 정비된 아악을 정밀하게 조합시키는 방향으로 정비되고 있었다. 「실록오례」는 바로 이러한 경향성의 절정이기도 하였다. 집현전의 관원들은 조선 나름의 오례를 정리하면서, 중국 유학의 정통에 놓인, 아악의 위상을 강조하고자 했다. 의례에 적용된 향악 관련 사항은 배우

110) 회례 의식의 정비 과정에 대해서는 강제훈, 「조선 초기 正至會禮 의식의 정비와 운용」, 『한국사학보』 34, 2009 참조.
111) 이 시기 회례에서의 用樂 개정 작업에 대해서는 임영선, 박사학위논문, 2020, 참조
112) 『세종실록』 권57, 세종 14년 9월 19일(갑술)

약술하거나 기록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오례를 편집하였다. 이것은 최초의 전례서인 『제사의식』과 『제사서례』가 작성될 때부터 일관된 방향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제 신악을 제사와 조회, 연향에서 광범위하게 적용할 것이 결정되었다.[113]

신악을 의례에 적용한다고 선언했지만, 구체적으로 각 의식의 절차와 음악(악・가・무)이 조응하는 원칙은 아직 세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향후 의례의 정리는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다시 조정되어야 할 상황이었다. 「실록오례」 편집의 실무자는 신악이 선포된 상황에서 작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점은 의정부도 마찬가지였을 것인데, 신악을 의례 전반에 적용할 것을 결정한 주체가 의정부였다. 선언은 되었지만, 세부사항은 마련되지 않았다. 신악과 의례 절차의 조응은 이후 의례 정비의 큰 현안이 된다.

6. 맺음말

이상의 검토를 정리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이글이 제시한 문제 제기는 왜 공들여 작성한 전례서의 편찬이 연대기 정리에서 외면받았을까 하는 단순한 것이다. 태종 때의 『제사의식』과 『제사의례』는 전례서 작성의 가장 초보적인 과제인 체양의 일치라는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당시 명의 의례 방식인 時制를 적용할 것인지, 당과 송의 계보를 잇는 古制를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물러서지 않는 대립이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명에 문의하기도 하지만, 대답을 얻지 못한 조선에서는 왕실조상 의례는 절충안을, 나머지 제사에는 시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사의식』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절충은 고제론과 시제론 모두에서 만족하지 않는 것이었다. 또한, 국왕은 의례 음악을 아악 중심으로 개정하기를 희

113) 「실록오례」는 각 의례 절차에 사용되는 음악을 직접 기술하고 있는데, 신악을 모든 의례에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전체 의주의 기술 사항을 수정해야 했다. 그러나 「실록오례」의 의주는 아악 위주로 용악 사항을 기술한 채 수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1447년(세종29) 출입악으로 여민락을 쓰는 결정이 있었지만(『세종실록』 권116, 세종 29년 6월 5일 을축), 「실록오례」의 의주는 출입악으로 아악곡인 隆安을 기입하고 있는 것이 한 예이다.

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의 모든 제사의례는 향악을 교주하는 방식으로 음악이 사용되었다. 『제사서례』의 음악은 아악만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과 괴리된 것이었다. 태종 때 작업에서 주목되는 점은 의례 정리에 앞서 음악의 정비를 먼저 진행했다는 사실이다. 아악을 바로잡는 작업이 선행되면서 의례 정비가 이어졌는데, 『조선국악장』이 이때의 결과물일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실록오례」는 오례 정리라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된 작업의 결과물이었다. 1444년(세종26) 세종은 오례 정리를 집현전에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시가 가능했던 데는 세종 치세 전 시기에 걸쳐 진행된 의례 정리 작업이라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태종 때 길례의 정리가 일단락되었지만, 그 결과물은 성립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다. 세종 즉위 이후 국상이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의례의 실제는 『제사의식』의 방식과 어긋나고 있었다. 고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고, 결국 1427년(세종9)을 기점으로 제사 의식을 고제 방식으로 전면 수정하게 되었다. 이때 제사악에 사용하기 위해 아악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고, 음악이론과 악기, 악대 등에 대한 전면적인 교정이 이루어졌다.

제사 의식와 음악이 정비되자 바로 조회의식과 조회 음악이 재정비되었다. 3품 이하를 먼저 위치시키는 선치 방식과 왕세자와 관원의 의례를 분리시키는 원칙이 수립되었고, 그 구체적인 방안이 고려되었다. 또한, 임금과 관원에게 적용하는 음악을 구분하였고, 조회의 악대와 악기도 새로 제작하였다. 음악의 새로운 정비는 의례 절차의 수정을 가져왔다. 의식마다 악대의 구성이 상이하게 설정되고, 운용되는 악대가 달랐기 때문에, 의례는 개정 이전과는 완전히 구분된 새로운 의식으로 변모하였다.

조선 고유의 습속이 강하게 작용하던 宴享도 공식적인 의례로서의 면모를 갖춘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다. 세종은 연향에서 향악의 사용을 강하게 고집했지만, 음악은 점차 아악 방식의 악·가·무를 새롭게 정비하면서, 의식도 정형화되었다. 전정에 헌가를 두고, 헌가 연주가 적용되는 武舞에 노랫말을 제작하였다. 악장을 노래하는 歌工을 헌가에 두기로 하면서, 회례에서 이루어

진 음악 정비의 결과를 제사 음악에도 적용할지 심각하게 검토하기도 하였다. 이 무렵까지 의례 정비는 정형화된 유교 의례에 집중하였고, 정비 결과는 아악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등, 중국식 제도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러나 1447년(세종29) 그동안의 아악 정비를 바탕으로 이와는 면모를 달리하는 신악이 창제되었다. 신악을 제례와 조회, 연향에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되면서, 신악에 조응하는 의례의 방식을 새롭게 설정해야 하는 숙제를 마주하게 되었다. 1444년부터 집중적으로 시도된 오례의 정리 작업은 신악의 전면 도입에 따라 제대로 마감될 수 없었다. 『세종실록』「악보」는 아악의 정리와 신악의 창제가 혼재된 형태로 제시되었다. 아악이 적용되는 의례는 신악이 적용되는 경우 절차의 수정이 불가피했다. 「실록오례」는 기본적으로 아악의 적용을 전제로 의식이 정리되었다. 「실록오례」의 내용구성 자체도 미완이었지만, 신악의 적용으로 발생한 문제는 당시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였다.

신악이 적용됨으로써 제기된 의례 정리의 현안은, 세조대를 거치면서 해결책이 모색되게 되며, 『국조오례의』는 부분적으로 신악의 창제가 의례 절차와 조응되는 결과를 반영한 전례서로서 작성되었다. 이 주제는 향후 별고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미리 지적해 두자면, 필자의 생각으로는 『국조오례의』 길례에서는 신악의 정리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지만, 속악 부분의 적용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했고, 가례와 군례, 빈례 등에서 의식 절차와 음악의 조응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상태였다. 이 영역에서 속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강화되었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원칙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 상태였다. 『국조오례의』 간행 직후, 성종의 친부가 덕종으로서 종묘에 봉안되는데, 『국조오례의』는 덕종의 부묘 이전에 마련된 懿廟의 체제를 담고 있다. 전례서로서 내용 구성상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한 셈인데, 이런 문제 외에도 의식과 음악의 조응이라는 현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한계도 있었다.

조선에서 유교적 예악의 정리가 단순히 중국적인 제도를 수용하는 선에서 머물렀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은 오랜 불교 사회의

습속에서 벗어나 유교적 이상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개혁 작업의 결과로 탄생하였다. 개국 이후 독자적인 천명을 받은 국가로서 조선 나름의 예악을 제도화하는 과제가 현안으로 인식되었고, 근 한 세기에 걸쳐서, 지속해서 이를 진전시켰다. 당시로써는 보편적 사상이며, 세계관이었던 유교적 이상을 조선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고, 이러한 움직임의 결과로 창출된 전례서는 간행 시점부터 그 한계점이 부각되는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례서 간행이 갖는 놀라운 성과와 의미에 대해서는 후고에서 부연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1. 사료

『朝鮮王朝實錄』
『高麗史』
『大明集禮』
『皇命制書』
『大唐開元禮』
『通典』
『文獻通考』
『國朝五禮儀』
『樂學軌範』
『大樂後譜』

2. 저서

강제훈 외, 『종묘, 조선의 정신을 담다』, 국립고궁박물관, 2014.
강제훈 편, 『조선 전기의 국가 의례와 의주』, 민속원, 2015.
고영진, 『조선중기 예학사상사』, 한길사, 1996.
_____, 『조선중기 예학사상사』, 한길사, 1996.
금장태, 『귀신과 제사—유교의 종교적 세계—』, 제이앤씨, 2009.
김동욱 외, 『왕권을 상징하는 공간, 궁궐』, 국립고궁박물관, 2017.
김승우, 『용비어천가의 성립과 수용』 보고사, 2012.
김해영, 『朝鮮初期 祭祀典禮 硏究』 집문당, 2003.
박원호, 『명초조선관계사연구』, 일조각, 2002.
宋惠眞, 『韓國 雅樂史 硏究』, 민속원, 2000.
이범직, 『韓國中世禮思想硏究—五禮를 中心으로—』 일조각, 1991.
_____, 『朝鮮時代 禮學硏究』, 국학자료원, 2004.
이 욱, 『조선 왕실의 제향 공간—정제와 속제의 변용—』,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_____, 『조선시대 국왕의 죽음과 상장례』, 민속원, 2017.
_____, 『조선시대 재난과 국가의례』, 창비, 2009.
장사운, 『증보 한국음악사』 세광음악출판사, 1986.
정화순, 『조선 세종대 조회아악 연구』, 민속원, 2006.
하양허씨문경공파종친회, 『敬庵許稠硏究』 2003,
한형주, 『조선초기 국가제례 연구』, 일조각, 2002.

3. 논문

강문식, 「태종~세종대 許稠의 禮制 정비와 禮 인식」, 『진단학보』 105, 진단학회, 2008.
강제훈, 「조선 초기의 朝會 의식」, 『朝鮮時代史學報』 28, 조선시대사학회, 2004.
_____, 朝鮮 世祖代의 朝會와 王權」, 『사총』 61, 고려대 역사연구소, 2005.

_____, 「조선 世宗代의 조회」, 『한국사연구』 128, 한국사연구회, 2005.
_____, 「「조선 초기 朝儀의 의례구조와 상징」, 『韓國史硏究』 137, 한국사연구회, 2007.
_____, 「조선 성종대 朝會儀式과 朝會 운영」, 『한국사학보』 27, 고려사학회, 2007
_____, 「조선 초기 正至會禮 의식의 정비와 운용」 『한국사학보』 34, 고려사학회, 2009
_____, 「조선 『世宗實錄』 「五禮」의 편찬 경위와 성격」, 『사학연구』 107, 한국사학회, 2012.
_____, 「조선전기 국왕 儀仗制度의 정비와 상징」, 『사총』 77, 고려대 역사연구소, 2012.
_____, 「『世宗實錄』「五禮」의 편찬 경위와 성격」, 『사학연구』 107, 한국사학회, 2012.
_____, 「조선왕릉과 왕릉 의례의 특징」, 『한국사학보』 54, 고려사학회, 2014.
_____, 「조선초기 국가의례 정비의 지향과 원칙」, 『민족문화연구』 68,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5.
_____, 「조선 초기 俗祭 祭祀床의 구성과 그 특징」, 『한국사학보』 60, 고려사학회, 2015.
_____, 「조선초기 왕실 조상의례의 유교적 정비」, 『한국사학보』 66, 고려사학회, 2017.
_____, 「조선시대 왕릉 의례의 특징과 개정」, 『역사와 경계』 113, 부산경남사학회, 2019.
_____, 「조선 세종조의 國家禮 정비와 五禮의 성립」 『한국사학보』 82, 고려사학회, 2021.
_____, 「조선 초기 종묘 親享儀의 禮樂 구성」 『한국사학보』 86, 고려사학회, 2022.
김문식, 「조선시대 國家典禮書의 편찬 양상」, 『장서각』 2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김지영, 「18세기 후반 國家典禮의 정비와 《春官通考》」, 『韓國學報』 30, 일지사, 2004.
김창현, 「『高麗史』 禮志의 구조와 성격」, 『한국사학보』 44, 고려사학회, 2011.
김철웅, 「조선초기 祀典의 체계화 과정」 『문화사학』 20, 한국문화사학회, 2003.
金泰永, 「朝鮮 初期 祀典의 成立에 對하여—國家意識의 變遷을 中心으로—」, 『역사학보』 58, 역사학회, 1973.
金海榮, 「조선 초기 禮制 연구와 『國朝五禮儀』의 편찬」, 『조선시대사학보』 55, 조선시대사학회, 2010.
_____, 『朝鮮初期 祭祀典禮 硏究』, 집문당, 2003.
박경지, 「조선초기 國家禮 정비와 『國朝五禮儀』 편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21.
송방송, 「세조조 음악업적의 역사적 조명」 『한국학보』 48, 일지사, 1987.
송혜진, 「세종대 동아시아 예악론의 인식 양상과 의례음악 정비」, 『한국학연구』 51,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14
신대철, 「『세종실록악보』 소재 신악과 관련된 고취악론 재고」, 『한국음악연구』 60, 한국국악학회, 2016.
석창진, 「조선 世宗妃 昭憲王后 國喪儀禮와 그 의미」, 『역사민속학』 45, 한국역사민속학회, 2014.
_____, 「조선 초기 유교적 국상의례의 거행양상과 그 특징」, 『한국사학보』 58, 고려사학회, 2015.
송인창, 「孔子의 德治思想」, 『현대사상연구』 4, 1987.
송지원, 「조선시대 유교적 국가제사 의례와 음악 -하늘, 땅, 인간과 음악-」, 『공연문화연구』 27, 한국공연문화학회, 2013.
_____, 「조선 초기 국왕의 음악정책—태조·태종·세조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57, 한국음악사학회, 2016.
_____, 「조선조 음악의 『시경』 수용과 활용 양상」, 『한국문학과 예술』 19,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16.
_____, 「『세종실록악보』 〈봉래의〉의 음악적 구현」, 『진단학보』 135, 진단학회, 2020.

安晞材,「朝鮮時代 國喪儀禮 硏究」,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2009.
양정현,「조선 초기 원경왕후 喪葬禮 의식과 그 특징」,『역사민속학』45, 한국역사민속학회, 2014.
이범직,「조선시대 왕릉의 조성 및 그 문헌」,『한국사상과 문화』36, 한국사상문화학회, 2007.
이완재・김송희,「조선초기의 儒敎的 國家儀禮에 대한 연구—五禮의 儀禮官을 중심으로—」,『한국사상사학』10, 한국사상사학회, 1998.
이 욱,「성물(聖物)기행: 제기(祭器) : 신을 위한 기물(器物)」,『종교문화비평』23,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13.
_____,「조선 전기 유교국가의 성립과 국가제사의 변화」,『한국사연구』118, 한국사연구회, 2002.
_____,「조선시대 왕실제사와 제물의 상징-혈식(血食)・소식(素食)・상식(常食)의 이념」,『종교문화비평』20,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11.
이재룡,「법가의 규범적 의미—예치와 법치의 조화」,『중국철학』3, 중국철학연구회, 1992.
이정훈,「朝鮮時代 禮의 法的 性格에 관한 硏究」,『법사학연구』33, 한국법사학회, 2006.
이지훈,「조선 세종 국상의 의식 구성과 진행」,『역사민속학』45, 한국역사민속학회, 2014.
이현진,「조선 왕실의 기신제(忌晨祭) 설행과 변천」『조선시대사학보』46, 조선시대사학회, 2008.
임민혁,「조선 초기 국가의례와 왕권—『국조오례의』를 중심으로—」,『역사와 실학』43, 역사실학회, 2010
_____,「조선초기 국조오례의 흉례의 구조와 의례적 성격」,『역사와 실학』50, 역사실학회, 2013.
임영선,「조선초기 회례 용악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20.
장사운,「세종대왕의 음악정신」,『제12회 동양학학술회의록』,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82.
鄭景姬,「朝鮮前期 禮制・禮學 硏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0.
鄭鍾秀,「朝鮮初期 喪葬儀禮 硏究」,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1994.
조용철,「朝鮮 世祖代 懿敬世子 喪葬禮 구성과 특징」,『역사민속학』45, 한국역사민속학회, 2014.
池斗煥,「國朝五禮儀 編纂過程(Ⅰ)—吉禮 宗廟・社稷祭儀를 중심으로」,『부산사학』9, 부산사학회, 1985.
최나래,「조선 초기 세조 국상 연구」,『역사민속학』45, 한국역사민속학회, 2014.
최연식・정경호,「『경국대전』과 유교국가 조선의 예치—예의 형식화 과정을 중심으로」,『사회과학논집』38-1,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2007.
최종석,「조선초기 '時王之制' 논의 구조의 특징과 중화 보편의 추구」,『조선시대사학보』52, 조선시대사학회, 2010.
한형주,「朝鮮初期 朝賀儀禮에 대한 考察」,『명지사론』13, 명지사학회, 2002.
_____,「15세기 祀典體制의 성립과 그 추이」,『역사교육』89, 역사교육연구회, 2004.
_____,「조선시대 국가제사의 시대적 특성」,『민족문화연구』4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4.
_____,「허조(許稠)와 태종~세종대 국가의례의 정비」,『民族文化硏究』44,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6.
_____,「조선전기 文昭殿의 성립과 그 운영」『역사민속학』24, 한국역사민속학회, 2007.
_____,「조선초기 왕릉제사의 정비와 운영」『역사민속학』33, 한국역사민속학회, 2010.

【Abstract】

Towards Confucian Ideal of Ruling; Publishing the Rituals Book with Unique Rites and Music in early Joseon

Kang, Jae Hoon*

Joseon denied the Buddhist-based Goryeo Dynasty and sought to implement Confucian rule using rite and music as a means of governing according to Confucian ideology. In Joseon, which wanted to have its own rite and music, the Confucian-style state ritual, *Orye* (五禮), had been organized through trial and error. In this article, the background of the creation of Orye, which was included as an appendix in the Annals of Sejong, was reviewed. It has already been pointed that Orye in the Annals of Sejong is an incomplete work. In this article, the fundamental reason why this work could not be terminated was pointed out the creation of new music such as *Yongbeocheonga* (龍飛御天歌), The Song of the Dragon Flying in the Sky. *Yongbeocheonga* was the music that justified the founding of Joseon and a magnificent piece of music composed of newly created melodies, lyrics, and dances.

The task of preparing a method of combining grand new music of a feature with ritual procedures could not be solved easily. Sufficient application and review were required to ensure that such complex music was properly combined with the progress of actual rituals. At the end of the work to organize the five categories of state rituals, a new music was created. This work could not be completed because the method of combining new music with ritual procedures was not determined. As pointed out in previous studies, the work of organizing five categories of state rituals was incomplete. However, crucially the variable that a new music was created was involved made it impossible to complete the work. The work of organizing *Orye* could not be completed until the time of King Sejo when the combination of new music and rituals was confirmed. However, because Confucian-style state rituals were being operated at a

* Professor, Dept. of Korean History, Korea Univ.

considerable level, and a new music was added to this, Joseon was able to take a step forward in its goal of preparing its own rite and music for Confucian ruling. The first five categories of state ceremonies made in Joseon were incomplete. However, based on this, Joseon developed a more sophisticated state ritual protocol. The Confucian state Joseon did not force Confucian values to take root in society, but the main background of the people's voluntary acceptance of Confucian ideology was the maintenance and practice of rituals.

Keywords: Annals of Sejong, *Yongbeocheonga* (龍飛御天歌), Confucian Rites, Ruling with rite and music, Five Rites.

접수일: 2022.12.30. ‖ 심사일: 2023.01.09. ‖ 게재확정일: 2023.02.20.